

- 그러나 1795년 귀화법은 귀화할 수 있는 권리만 유럽계 이민자들에게만 주고 원주민과 아프리카 노예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노예들은 투표를 할 수도 교육을 받을 수도 땅을 소유하거나 거주이전을 자유롭게 하거나 결혼하거나 증언하는 일 등을 할 수 없었다. 시민권은 투표권, 재산권과 법률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 초기 미국시민권은 혈통주의(jus sanguinis principle)에 기초하고 있었다. 초기시민들은 미국거주자여야했고 그 자녀들은 시민권을 받았다. 이 때가 이민에 대해 개방적이었던 시기였다.

1845-1880년 동안은 역시 노동력의 필요 때문에 주로 서유럽과 북유럽에서 온 이민에 개방적이었다.

- 1850년대에 아일랜드인, 독일계 유대인, 중국인들이 미국에 왔다.
- 1848년에 미국은 멕시코를 정복하며 남서부에 여러 개의 주를 합병하게 됐다. 각 주마다 법령은 달랐으나, 남서부에 거주하던 멕시코인들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졌다.
- 1865년에 노예들은 자유가 됐고, 1866년 시민권 법률은 미국출생자들에게 시민권을 주었다. 그러나 미국 원주민은 여기서도 제외됐다. 속지주의(jus solis)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1870년에 미국헌법 제15조 수정조항은 아프리칸 미국인 남자의 투표권을 제정했다. 그러나 1896년 연방대법원은 플레시 대 퍼커슨 판결(Plessy vs. Ferguson)에서 국내의 인종차별을 지지하는 “분리평등”정책을 판결을 통해 지지했다.
- 1878년 중국인들은 귀화할 자격이 없다고 발표되었다. 1882년에 10년간 중국인의 미국이민을 배제하는 중국인 배제 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10년간의 금지령은 1943년까지 유효했다.

1880-1920년: 이민개방은 3천만명에 달하는 폴란드인, 러시아계 유대인, 이탈리아인 등 남유럽과 동유럽

이민자를 데려왔다.

- 반이민(반 가톨릭, 반 중국인)운동 활발해졌다. 이 반이민운동은 결국 출신국에 따라 이민 인원수를 할당 받는 1924년의 이민법을 낳게 되었다. 이민은 멈추게 되었다.
- 반중국인 정책은 일본계 이민자의 수입을 불렀다. 1894년에 일본인들은 귀화자격이 없었다. 1903년에는 하와이에 한국계 이민자도 데려왔다. 1923년 역사적인 판결인 미국 대 bhagat Singh Thind은 아시아계 인도인은 귀화할 수 없다고 제한했다. 1913년 캘리포니아의 외국인토지법은 “시민권 자격이 없는 외국인”(중국인과 일본인)은 캘리포니아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선포했다.
- 1924년 이후에는 비자 또한 요구되었다. 그러나 북미, 중남미, 카리브는 비자할당제가 없었다.
- 1898년에 하와이가 합병되었고 필리핀과 이전 스페인의 소유물은 미국에게 양도되었다
 - 알래스카와 하와이같이 합병된 주에 대해 연방이민국은 이들 주에서 태어난 알래스카 거주자나 1867년 3월 30일 이후 출생한 자들을 미국시민이라고 정의했으나 시민권자 아닌 인디언(알래스카의 미국 원주민)들은 제외했다. 1867년 3월 30일 이후와 1924년 6월 2일 이전에 태어난 비시민권 인디언들은 1924년 6월 2일부터 시민권자가 되었다. 알래스카에서 1924년 6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인디언은 누구나 미국시민으로 간주되었다.

- 1898년 8월 12일 이후부터 1900년 4월 30일 이전에 하와이에서 출생한 하와이 거주자들은 1900년 4월 30일부터 시민권자로 간주했다. 즉, 하와이인 시민들은 1898년 미국에 하와이가 합병이 되며 미국시민이 됐다.
- 1899년 4월 11일 이후부터 1941년 1월 13일 전에 푸에르토리코에서 출생한 푸에르토리코인은 1941년 1월 13일부터 미국시민으로 간주됐다. 미국본토의 주들보다 미국점령지가 훨씬 늦게 시민권자격을 부여 받았다. 다른 미국점령지는 각기 다른 날짜에 시민권자격을 받았다.
- 1918년 아시아계 미국 군인들은 귀화할 수 있었다. 군복무는 귀화할 수 있는 한 통로가 되었다. 미국에서 출생하지 않은 아시안계는 아직도 귀화할 자격이 없었다. 1934년 타이дин스-맥듀피 법안(Tydings-McDuffie)에 의해 필리핀인들은 미국국민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1933년부터 필리핀인도 시민권을 부여 받을 수 없었다.
- 1920년에 여성들은 투표권을 얻었고, 미국원주민들도 시민권을 얻고, 투표권을 가지게 되었다. 1907년 국외거주법(Expatriation Act)은 미국여성이 외국민과 결혼하면 미국시민권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1922년의 케이블 법(Cable Act)은 국외거주법을 무효화 했으나 아시아인과 결혼하는 미국여성은 여전히 시민권을 상실한다고 명시했다.
- 1935년에 와서야 루즈벨트 대통령은 시민권을 부여 하였고, 1940년의 국적법은 속지주의(jus solis)를 적용했다. 필리핀인과 아시아계 인도인은 1946년에 귀화할 수 있었다. 1965년 이민법은 이전까지 이민법은 완전히 자유로워 지지 않았고, 귀화를 위한 현 거주기간요구는 법제화되었다.
- 모든 미국인은 1960년 민권법(Civil Rights Act)으로 투표권을 얻었으나 1965년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이전까지는 연방법이 지방의 법과 규칙보다 우위에 서지 못했다.

1965년 이민법의 중요성

1965년 이민법의 변화가 없었다면 미국은 오늘날처럼 다원화되지 못했을 것이다. 1960년대 인종관계는 일반적으로 백인과 흑인간(또한 미국 원주민)의 관계를 의미했다. 오늘날 흑-백이분법은 1965년 이민법의 수혜자들인 아시아계 미국인과 카리브계 미국인, 남미계의 경험을 담아낼 수는 없다. 이 법의 개정은 가족의 재결합과 전문직들에게 특혜를 주었다. 그러나 이법이 아시아계와 남미계 이민자를 데려오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정책입안자들은 아시아계와 남미계 이민자가 법개정의 혜택을 얻지 못하리라고 확신했다. 사실상 그들의 의도는 유럽계 이민자를 장려하려는 것이었다.

미국에 가족 구성원이 이미 있는 사람만이 가족재결합을 할 수 있고 가족이 없는 사람은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1880년부터 1920년까지 입국하여 귀화한 유럽계 민족과 미국에서 출생한 유럽계 상당수가 유럽으로부터 가까운 친척들을 보증할 수 있었다. 반면에 아시아계 미국인수는 1960년대 초까지 적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작은 인구규모 때문에 가족 재결합 정책은 전체적인 이민유입에 아주 작은 흡집을 만들 뿐이었다.

결국 초기 아시아계 이민은 가족 재결합이 아니라 직업 특혜제에 기반하고 있었다. 미국경제의 팽창으로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기술자)이 필요했기 때문에 특정직업특혜는 아시아계 전문가들에게 영구적인 거주를 보장했다.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온 아시아계 외국인 학생들 또한 영주권을 얻고 졸업후에 미국에서 직장을 잡았다. 경제가 둔화되며 기술적 이민에 제한이 많아지자, 귀화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가족재결합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남미인과 카리브 이민자들은 가족재결합과 직업적 특혜제를 비슷하게 이용해 미국에 입국했다. 아시아계와 남미계 미국인의 의도되지 않았던 연쇄 이주는 결국 미국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풍광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

다른 정치적 요소들도 또한 현재의 이민정책을 이끌었다. 한가지 언급할 중요한 점은 쿠바, 베트남, 인도차이나 국가들과 같은 공산국가에서 온 난민과 망명자들의 유입이다. 미국사회를 더욱 다원화 시킨 이 난민들의 유입 뒤에는 미군의 개입이 있었다(엘 살바도르, 니카라과, 아이티, 쿠바, 인도차이나 등)

난민에 대한 미국정책은 아직 단일화되지 않았다. 1959년 쿠바혁명 이후 쿠바인들은 마이애미로 도피했다. 쿠바인의 마이애미 집중은 활기가 넘치는 민족적 특별지역을 만들었다(작은 하비나). 쿠바계 미국인들은 난민이었기 때문에 일반 이민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복지 혜택을 제공받았다. 반면에 인도차이나계는 한 지역에 그들이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에 흩어졌다. 즉, 이 정책은 또 다른 '작은 하비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인도차이나계 난민들도 그들의 미국정책을 돋기 위해 복지혜택을 받았다.

현 시민권 법률

- 혈통주의(jus sanguinis)와 속지주의(jus solis) 원칙이 적용됐다. 미국에서 출생한 외국의 수반이나 외교관의 자녀들에게는 비록 영주권이 주어졌지만 여기에서 제외 됐다. 만일 한 아이가 미국항공에서 비행 중 출생했다면 그 아이는 시민권을 부여 받는다. 만일 한 아이가 미국 항공을 타고 미국사법관찰권 밖에서 비행 중 태어났다면, 그 아이는 미국시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 미국시민의 아이가 미국 밖에서 출생한 경우, 그 아이는 부모가 미국에 거주지가 있는 한 자동적으로 미국시민이 된다. 부모 중 한명이 미국 시민이어도 그 아이는 미국 시민이고, 부모 중 한명이 아이의 출생이전에 5년 동안 미국에 거주했어야 하고, 14세 이후 적어도 2년은 거주했어야 한다.
- 군복무나 미국정부의 고용으로 해외에 사는 경우는 미국거주로 본다. 이법은 베트남전 이후 처음에는 미국군인과 베트남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시민권 주의를 따르고, 아이의 출생이전에 만1년 동안 지속적으로 거주한 시민권자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들에게는 자동 시민권이 주어졌다. 최근에 와서야 시민권자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에게도 같은 권리가 주어졌다. 다만 시민권자 부는 아이의 출생 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만일 시민권을 포기하기로 결심하면, 이 조치는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시민권을 회복하려면 각 사안은 해당 주 정부의 개별적 기초에 기반 하여 결정된다.

영주권

범죄를 저지르거나 영사관의 동의 없이 1년 이상을 부재한 사람은 영주권을 취소할 수 있다.[2001년 9.11 이후]

이민개방시기와 현대의 이민 범주는 다음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

- 가족에 기반
- 고용에 기반
- 입양
- 망명
- 투자
- 다원화를 위한 추첨에 의한 이민

비이민 비자

미국경제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취업을 위한 비이민비자가 있다.

- H1B- 특수 직업
- H1C- 간호사
- H2A- 소수라고 불리는 임시직 농부

이중 국적

미국은 이중국적을 권장하지는 않으나 인정한다. 전에는 주정부가 이중국적 사건들을 추적했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사건들을 찾지 않는다.

해외 미국인들 (Overseas Americans)

해외거주는 미국시민권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자신의 미국시민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귀국해야 할 법적 필요는 전혀 없다.

혜택

일반적으로 연방기관은 매월 혜택 검사증을 해외의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재무부에 보낸다. 해외 미국인에게는 사회보장금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의료보험은 미국밖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투표

해외미국인은 또한 부재자투표를 통해 모든 연방 선거와 많은 주 선거, 지방선거에 투표권이 있다.

이민통계

연방 이민국은 1957년 이후 이민 통계를 수집하지 않았다. 어림잡아 1970년 이후 한해에 십만이 넘는 이민이 있었고, 이민이 증가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1900년부터 1990년 사이에 수치는 미국에 입국한 3천8백만명 중 1천2백만에 가까운 해외출생자들이 미국을 떠났음을 보여준다. 실제 미국으로 이민한 자는 약 2천6백만명인 것이다. (a ratio of .31.)

1980년대에 이민을 가는 나라는 멕시코(55,000), 영국(31,000), 독일(29,000), 캐나다(20,000), 일본(19,000), 필리핀(19,000), 과테말라(13,000), 인도네시아(9,000), 호주(8,000), 이탈리아(4,000)순이다. [INS 2]. 이들은 해외에서 태어났으나 미국으로 돌아 왔었던 사람들이다. (단, 이 자료는 주의를 요한다)

해외에 사는 미국인

출처: Richey 1997, p. 9

캐나다	626,585
멕시코	550,147
영국	216,000
이스라엘	158,400
이탈리아	146,100
독일	130,402
필리핀	118,000
프랑스	86,037
도미니카 공화국	85,900
그리스	82,500
일본	73,301
호주	63,800

해외에는 다수의 미국인학교가 있는데 15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학교들도 있다.(1850년대 중반) 미국인 선교사들도 해외에서 활동하며 해외미국인 인구를 구성한다. 미국영사관과 대사관 직원들도 해외 미국인이다.

시민권과 정치

유럽계 이민자집단이 사회적 신분상승을 하는 주된 방법은 귀화하여 투표권을 얻는 것이었다. 이것은 특히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의 경우인데, 이들은 뉴욕시의 정치계에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도시정치활동을 이용했다. 민족적 정치활동은 아일랜드계 미국인들에게 도시 전반에 걸친 일자리를 보장해 주었는데, 특히 경찰과 소방서는 사실상 아일랜드계의 자리가 되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도 역시 미국 인종차별주의를

분쇄하기 위해 정치적 투쟁을 했다. 흑인 정치활동과 시민권리 운동의 중요한 결과로 이민법이 자유화되었고, 모든 시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1960년대).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다른 인종적 소수자들의 정치적 노력 덕분에 거주지 인종차별과 학교의 인종차별이 폐지되었다. 오늘날 이민자들은 많은 시민 권리들을 가지고 있으나, 이 권리들이 40년 전의 인종적 소수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민자들을 귀화하도록 노력하는 이들이 있고, 유권자라는 이들의 힘은 정치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필요에 주목하도록 할 수 있다.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기본권

- 미국에는 국가차원의 신분증 제도가 없다. 기본적으로 일반인의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의 주된 역할을 한다.
- 불법체류 이민자는 의료보험, 최소임금, 근무초과에 관한 권리가 있다. 캘리포니아의 187건의안(Proposition 187)은 위 기본권을 박탈하고자 투표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 공립학교는(고등학교까지) 불법체류자의 자녀의 교육을 거부할 수 없다.
- 공립학교에서는 이중언어 교육(ESL 수업과 모국어로 수업지시가 제공되는)이 제공된다.

최근 미국은 911사태 이후 가혹한 이민법을 강요하고 있다. 경미한 범죄(비자 초과체류)조차 추방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영주권자도 유죄선고를 받으면 추방되고, 법적 지위를 잃을 수 있다. 특히 외국인 방문자들의 지문을 날인하고자 이민법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입법안들이 현재 있다.

POLICY TOWARDS RACIAL/ETHNIC MINORITIES: US

Dae Young Kim

America's Racial and Ethnic Diversity: A Nation of Immigrants

America prides herself as a nation of immigrants. The ideology of the "melting pot," the mixture of diverse groups of people under one soil, is heavily stressed and trumpeted by the media and politicians. However, if we look at the history of America and current racial and ethnic relations, the US is far from the melting pot idea of egalitarianism and acceptance.

- When the US began as a nation, there was no intention for racial and ethnic pluralism. What produced the racial and ethnic pluralism that we associate with America today was the availability of land and the demand for labor. In other words, immigration policy before 1960s could be aptly summarized as a struggle between capitalists and labor.
-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ethnic group that dominated the colonial society was the British. With colonization and subsequently the creation of a new republic, Native Americans were conquered and decimated, either through force or disease.
 - Anglo-conformity was the dominant culture and other European ethnics had to conform to Anglo culture and society. This was the dominant view of assimilation in the US.
 - The demand for labor prompted the use of Native Americans in the Encomienda system by the Spanish. As natives to the land and knowledgeable of the terrain, Native Americans simply ran away and could not be controlled. This forced the colonists and the new republic to import labor from Europe through indentured servitude. This system brought British and Northern/Western Europeans to work for a number of years until they were granted freedom and could become "free" whites. In the 1600s the colonists also entertained with the importation of African slaves. Tobacco plantations began to utilize African labor. It was not until the introduction and profitability of cotton that the system of slavery was institutionalized and operating in full swing. [African slaves were also

forcibly brought to work in the Caribbean and South America in sugar and coffee plantations]

- Congress passed the first naturalization act on March 26, 1790. Any free, white, adult alien, male or female who had resided within the limits and jurisdiction of the United States for a period of 2 years was eligible for citizenship. In 1795, the Naturalization Act granted citizenship to "free white persons" after five years of residence and renouncement of allegiance. Then, in 1798, a more rigid law extended the residency time required to 14 years. Initially the right to vote was granted to both the native-born and the foreign-born. The change was prompted for political reasons since parties with non-citizens would be deprived of voters. Finally, in 1802, the residency requirement was reduced to 5 years, where it has remained to this day.
- The 1795 Naturalization Act, however, gave the right to naturalize to only European immigrants but not to African slaves and Native Americans. Slaves could not vote, receive education, own land, move freely, marry, testify, and so on. Citizenship grants the right to vote, own property, and receive legal protection.
- US citizenship was initially based on the *jus sanguinis* principle. Citizen fathers had to be US residents and children were granted citizenship. This time period was a time of open door immigration.

During the period 1845–1880, the need for labor again drives open immigration, predominantly from Western and Northern Europe.

- The Irish, German Jews, and the Chinese arrive in the US in the 1850s.
- Mexicans are conquered by the US in 1848, annexing a number of states in the Southwest. While laws vary by states, citizenship is extended to 80,000 Mexican residents of the Southwest.
- Slaves are freed in 1865 and the 1866 Civil Rights Act gives citizenship to native-born Americans except Native Americans. The principle of *jus solis* begins to apply. The 15th Amendment in 1870 establishes the right of African American males to vote. However, in 1896 the Supreme Court upholds the principle of "separate but equal" in *Plessy vs. Ferguson*, leading to American Apartheid in the US.

- In 1878 Chinese are declared ineligible for naturalization. In 1882 the Chinese Exclusion Act is passed, singling out the Chinese from immigrating to the US. The ban is for 10 years but the ban is not lifted until 1943.

1880-1920: Open immigration brings close to 30 million immigrants from Southern and Eastern Europe- Poles, Russian Jews, Italians.

- Anti-immigration movement (anti-Catholic, anti-Chinese) becomes active leading eventually to the immigration Act of 1924, where quotas (for Europe and Asia) are set up according to national origins. Immigration comes to a halt.
- Anti-Chinese policy leads to the importation of Japanese immigrants. In 1894 Japanese are ineligible for naturalization. Korean immigrants are also brought over to Hawaii in 1903. The landmark 1923 case (US vs. Bhagat Singh Thind) rules that Asian Indians cannot become naturalized. The 1913 California's Alien Land Law declares that "aliens ineligible for citizenship" (Chinese and Japanese) cannot own property in CA.
- Visas are also required after 1924 but North, Central, South America and the Caribbean have non-quota visas.
- Hawaii is annexed in 1898 and the Philippines and former Spanish possessions pass under US possession.
 - For states that become annexed like Alaska and Hawaii, the INS defines Alaskan residents born in these states on or after 3-30-1867 as US citizens except for noncitizen Indians (Native Americans in Alaska). Noncitizen Indians born in Alaska on or after 3-30-1867 and before 6-2-1924 are considered citizens as of 6-2-1924. Any Indian born after 6-2-1924 in Alaska is considered a US citizen.
 - Hawaiian residents born in HI on or after 8-12-1898 or before 4-30-1900 are considered citizens as of 4-30-1900. In short citizens of HI after Hawaii is annexed in 1898 are considered US citizens.
 - Puerto Ricans born in PR on or after 4-11-1899 or before 1-13-1941 are considered citizens as of 1-13-1941. Citizenship has been granted much later to a US possession than a state of the US. Other US possessions have different dates of citizenship.
 - In 1918 Asian American servicemen can become naturalized. Military service

serves as an avenue for naturalization. Still Asians are not eligible for naturalization unless born in the US. In 1933 Filipinos become ineligible for citizenship, as the 1934 Tydings-McDuffie Act stops Filipino status as US nationals. Through this act US grants independence to the Philippines in 1946. Filipinos are reclassified as US citizens in 1942, allowing them to be registered in the military.

- Only in 1920 women gain the right to vote and Native Americans are granted citizenship and the right to vote as well. In 1907 the Expatriation Act states that American women can lose their citizenship if they marry a foreign national. The Cable Act in 1922 repeals the Expatriation Act but states that American woman marrying an Asian can still lose citizenship.
- Not until 1935 does FDR grant citizenships and the Nationality Act of 1940 applies the principle of *jus solis*. Filipinos and Asian Indians can become naturalized in 1946. Not until the 1965 Immigration Act, immigration law is fully liberalized and current residency requirement for naturalization is enacted.
 - Voting rights for all Americans are accorded with the 1960 Civil Rights Act, but federal laws do not supersede local laws and practices until the 1965 Voting Rights Act.

The significance of the 1965 Immigration Law:

Without the changes in the 1965 immigration law, America would not have become as diverse as it is today. Race relations prior to the 1960s generally meant relations between whites and blacks (also Native Americans). Today, the white-black dichotomy cannot capture the experience of Asian Americans, Caribbean Americans, and Latinos, the primary beneficiaries of the 1965 immigration law. The revisions of the law gave preference to family reunification and skilled occupations. The law, however, was not intended to bring in immigrants from Asia and Latin America. Policymakers were confident that Asian and Latino immigrants would not benefit from the revisions. In fact, their intentions were to encourage European immigration.

Why? Unless immigrants had family members in the US, family reunification would hardly benefit those who had no family members. Given the large numbers of European ethnics who had entered during the 1880-1920 period, the naturalized and US-born European ethnics could sponsor their immediate family members from Europe.

On the other hand, the number of Asian Americans in the US prior to the 1960s was small. Given the small size of the Asian American population, family reunification policy would make very little dent on the overall immigration flows to the US.

Consequently, Asian immigration at first was not based on family reunification but on occupational preference system. Because of the needs of an expanding US economy for skilled labor (doctors, nurses, engineers), the occupational preference category granted permanent residency to Asian professionals. Asian foreign students also came to study in the US and obtained jobs after graduation, earning their green cards in the process. As the economy slowed down and more restrictions were placed on skill-based immigration, Asian immigrants started using family reunification after becoming naturalized.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immigrants similarly used both family reunification and occupational preference system to enter the US. The result has been an unintended chain migration from Asia and Latin America with huge impacts in the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landscape of the US.

Other political factors have also driven the current immigration policies. One that is important to mention is the influx of refugees and asylum seekers from Cuba, Vietnam, and Indochinese countries as well as other communist countries. US military involvement has been behind the flow of refugees, further diversifying US society (El Salvador, Nicaragua, Haiti, Cuba, Indochina, etc).

US policy toward the refugees has not been uniform. After the revolution in Cuba in 1959, Cubans have fled to Miami. The outcome has been the concentration of Cubans in Miami (Little Havana) and the establishment of a vibrant ethnic enclave. As refugees, Cuban Americans were provided welfare assistance, which is not accorded to regular immigrants. The Indochinese, on the other hand, were scattered around the country to minimize their impact in a particular area. In short, the policy was designed to prevent another Little Havana. The Indochinese refugees also received welfare assistance to ease their transition in America.

Current Citizenship Laws

- Today the principles of *jus sanguinis* and *jus solis* are applied. Children of foreign heads of state or diplomats born in the US are excluded, although they are granted permanent residency. If a child is born while flying within the US, the child is granted citizenship. If the child is born while flying a US carrier outside of US jurisdiction, the child is not considered a citizen.
- If a child is born outside of the US to US citizens, they are automatic citizens as

long as parents have had some residence in the US. The child is still a US citizen if at least one parent is a US citizen and the parent had 5 years residence prior to the child's birth, at least 2 years of which were after the age of 14.

- Living abroad in military service or U.S. Government employment can be considered as US residence. At first after the Vietnam war, as a result of Amerasian children born between a US military personnel and Vietnamese woman, the law did not grant automatic citizenship to children born from these relationships. Automatic citizenship had been granted to children born to citizen mothers and foreign fathers, following the principle of mother's citizenship and residency of 1 continuous year prior to the child's birth. It is only recently that children born to citizen fathers and foreign mothers have been granted the same right. The only qualification is that citizen fathers have to have met residency requirements before the child's birth.

If a person decides to renounce citizenship, the process is considered irrevocable. To regain US citizenship, the case is decided on an individual basis by the state department.

Green card

A person can be revoked of permanent residency if convicted of crime or maintains absence more than a year without getting approval from the consular office.
[After 9-11-01]

After the periods of open immigration, contemporary immigration categories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 Family-based
- Employment-based
- Adoption
- Asylum
- Investment
- Diversity lottery

Nonimmigrant visas

There are number of nonimmigrant visas. The category of temporary workers has been created to meet the labor needs of the US economy. These are

- H1B- specialty occupations
- H1C- nurses
- H2A- temporary agricultural workers, to name a few.

Dual nationality

US does not encourage dual nationality but does recognize dual nationality. While previously the state department pursued dual nationality cases, now they do not track these cases.

Overseas Americans

Residence abroad, in and of itself, has no effect on U.S. citizenship and there is no requirement of U.S. law that a person who is a naturalized U.S. citizen must return to the United States periodically to preserve his or her U.S. citizenship.

Benefits

Federal agency monthly benefits checks are generally sent from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to the U.S. embassies or consulates abroad. Overseas Americans are entitled to these benefits such as social security payments. Medicare is not covered outside the US.

Voting

Overseas Americans are also eligible to vote by absentee ballot in all Federal elections and may also be eligible to vote in many state and local U.S. elections.

Data on emigration

The INS does not collect data on emigration from the US since 1957. Estimates indicate that emigration from US has increased, more than 100,000 per year since 1970. Figures between 1900 and 1990 show that close to 12 million foreign-born persons emigrated out of 38 million who had entered the US. The net immigration is roughly 26 million, a ratio of .31. In the 1980s, the top destination countries of emigration (241,000) were to Mexico (55,000), UK

(31,000), Germany (29,000), Canada (20,000), Japan (19,000), Philippines (19,000), Guatemala (13,000), Indonesia (9,000), Australia (8,000), and Italy (4,000) [INS 2]. These are foreign-born US residents returning back. But the data should be interpreted with caution.

Americans living abroad

Source: Richey 1997, p. 9

Canada	626,585
Mexico	550,147
Britain	216,000
Israel	158,400
Italy	146,100
Germany	130,402
Philippines	118,000
France	86,037
Dominican Republic	85,900
Greece	82,500
Japan	73,301
Australia	63,800

There are a number of American schools abroad, some having more than 150 years of history (mid 1850s). American missionaries have and continue to spent time abroad, constituting the overseas population. Members of the American consular and embassy offices are the other overseas population.

Citizenship and Politics

A major channel of mobility for European immigrant groups has been the ability to become naturalized and attain the right to vote. This was particularly the case for Irish immigrants who used urban politics to secure Irish Americans in New York City political scene. Ethnic politics secured for Irish Americans city-wide jobs, particularly in the police and fire departments, becoming virtually Irish niches. African Americans also waged political struggles to dismantle American Apartheid. One of the important consequences of black politics and the civil rights movement has been the liberalization of the immigration law and

voting rights for all citizens (1960s). Residential desegregation, school desegregation can be attributed to political efforts of African Americans and other racial minorities. Today immigrants have many civil rights, unaware that these rights were unavailable to racial minorities 40 years ago. There are efforts to naturalize immigrants, whose power as voters could force politicians to pay attention to their needs.

Basic rights for undocumented immigrants

- There is no system of national identification in the US. One's driver's license basically serves as a main form of identification.
- Undocumented workers have the right to health, right to minimum wage and overtime. Proposition 187 in CA was put on the ballot to strip undocumented workers of these basic rights.
- Public schools (through high school) cannot deny education to children of undocumented immigrants.
- Bilingual education (offering ESL classes and instruction in native languages) is offered in public schools.

Today after the events of 9/11 the US is imposing harsher immigration laws, one of which is deportation for even minor offenses (visa overstays). Even permanent residents can be deported and lose their status if convicted of a crime. Currently there are several new proposals to toughen immigration laws, in particular the fingerprinting of foreign visitors.

토론글

김대영의 “인종적, 종족적 소수를 위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토론

박준규(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인류학 전공 박사과정)

김대영씨의 발제문은 요약적으로 미국의 이민 역사와 소수민족 정책의 변천사를 연대별로 정리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미국이 오늘날 자칭 '이민자의 나라' 또는 소위 '다수의 하위민족이 결합하여 생성한 다원주의적 민족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의도 하지 않은 결과이며 오히려 미국의 현실은 이 이미지와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제문의 성격상 내용에 대하여 친반 토론을 진행할 수 없기에 나는 발제문을 읽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관련하여 느낀 점들을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노동력 수요와 이민과의 밀접한 관계 심지어는 노동력 수요가 이민 정책의 동기라는 점은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민역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늘날 재한 아주노동자들의 사회적 이슈의 출발점은 외국인 연수생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세계 경제과 관련하여 한국 경제 구조의 재편성 즉 개발도상국에서 준선진국으로의 경제발전은 소위 3D업종이라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력 부족 현상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한국정부는 '외국인 연수생'이라는 치장 하에 저임금으로 아주노동자들을 국내에 유입시키고 있다. 만약에 유럽과 미국의 아주노동자 유입이 과거 식민지 및 현재 종속관계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된다면 한국은 한국기업의 국제화로 인하여 중국, 동남아시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으로의 진출과 맞물려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다. 당연히 과거 한국인들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 속아 하와이 시탕수수 노동자로 끌려가다시피 한 것과 같이 오늘날 재한 아주노동자들의 유입 과정에 한인교회 선교 활동의 역할 또한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재한 아주노동자들 및 재외동포의 사회적 이슈의 해결은 남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의 올바른 이해 및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남한의 비정규직을 포함한 다른 노동 문제의 해결 없이 아주노동자들의 사회적 이슈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쌍방향 참여지만 아주노동자들이 남한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 나라의 아주/이민 정책이 국지적 및 국제적 경제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김대영씨가 지적한 과거 유럽계 미국인 및 혈인들이 추구해 왔던 대안 즉 시민권과 투표권 확보라는 민권운동을 우리는 진지하게 재평가 해 보아야 할 것이다. 나는 시민권과 투표권 확보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민권운동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 없이 진행되는 민권운동은 소위 '중간계급의 운동'으로 전락하였으며 오늘날 미국사회에는 근본적으로 인종 간이 아닌 계급 간의 극심한 부의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소수민족 또는 이민자들의 민권운동의 한계는 일부 '성공'한 소수민족인들로부터 약자보호정책의 폐지론이 주장 되면서 절정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1995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 온 후 이제 7년 이상을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1998년 대학원에 입학하여 학생비자를 받기 전까지는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외를 나갔다.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2000년 이후 문제의 재외동포법에 의해 거소비자를 받게 되어 상대적으로 불편함 없이 한국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편함이란 상대적이기에 일상생활에서는 아직도 많은 불편함을 경험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나는 미국에서 귀화 신청시 해야 했던 지문날인을 한국에서 거소 신청시 또 해야 했다. 이 때 나는 미국과 한국의 차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을 알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 자동차관리국이 미국 관료주의를 대표한다면 재한 외국인들에게 있어서 출입국관리국은 한국의 관료주의를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00년 전 출입국관리국은 그 곳을 방문하는 거의 모든 외국인들에게 무시, 경멸, 차별, 등등의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한국인 관료로부터 전해지는 곳이었다. 그러나 2000년 재외동포법 이후 그 곳에서는 인종과 국적의 차별적 대우를 목격 할 수 있게 되었다. 출입국관리국 관료들로부터의 차별 및 무시는 한국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을 포함 모든 민족-국가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인종차별주의와 편견은 흔히 미군정부시기와 미국 문화의 무분별 수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그 자체에 대한 편견 및 배타성은 '단일민족'으로 오래 동안 살아온 한국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근대 민족-국가의 생성 과정 이후 전세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거의 모든 민족-국가는 생성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 민족-국가의 지배계급은 신화, 편집된 부분적 역사, 상징, 대중매체 등을 동원하여 '상상 된 민족성'을 마치 고유하고 영원한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이 과정에서 '단일 민족성'을 해할 수 있는 소수민족을 차별 심지어는 학살까지 하였다. 또한 남한의 경우 민족-국가의 단일성과 '한국/남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이데올로기 장치 중 하나가 병역문제이다. 재미동포로서 나는 지난 해 소위 '유승준 사건'이라고까지 불려진 유승준의 병역기피 해프닝에 대한 한겨례신문의 '과잉'반응을 보면서 한국의 뿌리 깊은 남성주의와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타자' 배타성으로서의 민족주의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나는 최근에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호주의 한 난민수용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의 사연도 중요하지만 나는 프로그램 중 호주의 아주 보수적이고 우익이라고 알려진 이민국 장관과의 인터뷰에서 그가 한 '자신감' 넘친 말들에 현기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현재 수감 중인 한국인이 호주를 떠난다고 한다면 당장 풀어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말 이면에는 많은 우익들이 외치는 '이 나라에 문제가 있으면 이 나라를 떠나라'라는 이데올로기적 공세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누가 과연 호주의 주인인가, 그 백인 장관이?"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질문 또한 호주라는 민족-국가의 신성함을 전제하고 있기에 호주 토착민/선주민들이 진정한 주인이라고 답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모든 민족-국가는 '상상 된 것'이기에 '진정'한 주인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다. 당연히 한 영토에 지역에 주인은 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영토나 지역에서부터의 지배와 착취에 저항할 권리와 책임이 있는 만큼 다른 영토나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소유권이

전제된 의미의 주인이 아니라 그 지역에 공동체로 거주하고 있는 여러 사람을 말한다.

정리하자면 이주노동자들의 사회적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민족-국가의 '허구'성에 기반 한 민족주의를 올바로 이해 한 후 이에 맞서는 모든 운동과 함께 해야 한다. 끝으로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주노동자 및 불평등한 재외동포법 개정 운동은 현재 미국 제국주의가 저지르고자 하는 추악한 전쟁에 반대해야 하며 테러주의와의 전쟁이란 빌미로 한국정부가 행하는 재한 이슬람교인들에 대한 차별 및 탄압에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POLÍTICA SOBRE PEQUENAS COMUNIDADES ESTRANGEIRAS

브라질의 소수민족정책

김범진(브라질 한인회 부회장)

브라질은 다인종 국가로, 세계 각지 다양한 문화의 용광로이다. 여기로 이민 온 다른 많은 겨레들처럼 한국 사람들도 음식, 민속 및 관습, 사회, 정치 및 경제 영역 등 여러 가지로 이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 세계 각지 그리고 한국에서 온 이민자 없이 브라질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여러 분야에서 한인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브라질에서 무시 못 할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화의 맥락에서는 중요한 민족임을 나타내고 눈에 띄게 두드러진다.

1. 브라질의 한인 공동체 형성

2003년 2월 12일이 되면 브라질의 한인 공동체 역사는 공식적으로 40주년을 맞이한다. 브라질의 한인 이민은 몇 주 간의 항해 뒤에 1963년 2월 12일에 산투스 항구에 17 가구가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남아메리카 여러 곳의 브라질 국경을 통해 많은 한인들이 불법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때인 70년대 초까지 이민 유입은 꾸준히 지속되었다.

최초의 한인 이민은 일본에 살던 한인으로 20세기 초반에 매우 많았던 일본 이민의 물결과 함께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일본인의 이름과 정체성을 갖고 있었지만 여기 도착하면서 한인임을 나타냈다. 이런 한인 외에도 한국 전쟁과 분단 시기에 전쟁 포로와 정치적 망명자들이 브라질에 와서 작은 핵을 이루었다.

공동체의 발자취는 산발적인 이민 유입과 경제적 안정을 찾아온 많은 불법 이민의 입국으로 굴곡이 많았다. 예를 들 수 있는 한 가지 흥미 있는 사례는 한국 출신 화교 그리고 처음에는 중국으로 이민간 조선 시대의 한인 후손들로서, 브라질에서도 한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간주되었다.

오늘날 한인 공동체는 아직 몇몇 사회적 측면에서 폐쇄적인 상태로 있기는 하지만, 고유의 사회적 역동성으로 인해, 지금 살고 있는 사회의 다른 이들과 섞여 사는 자연스런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이제는 배우자가 브라질 사람인 가족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민 초기에는 생각할 수도 없던 일이다.

2. 한인 공동체의 분류

한인 공동체는 15세기와 18세기에 걸쳐 형성되어 포르투갈인, 원주민, 흑인을 포함한 브라질 인구의 초기 형성 시기 이후에 확립되었다.

20세기 초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이민을 받아들였다: 더 좋은 삶의 조건을 찾아서 또는 전쟁을 피해온 사람 그리고 정부의 외교 정책에 따라 온 사람들이 있었다.

초기 이민들과 한인들은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시 짓고자 왔는데, 경제, 사회적인 면과 하부 구조에 있어서 한국 전쟁으로 나라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인 공동체는 이민으로 분류된다.

3. 브라질의 민족 구성

브라질은 포르투갈 항해자들이 1500년 4월 21일에 발견하였으며, 그들은 브라질 안으로 처음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이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거대한 이민 물결이 있었을 때 많은 민족들이 20세기 초까지 여기에 왔다.

1500년에서 1900년까지, 이미 정착한 인디오들과 포르투갈인 발견자들,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사람들, 그리고 16세기와 17세기에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 브라질의 모습을 만들었다. 1900년 이후, 이탈리아, 독일, 일본, 레바논, 아랍, 중국 사람과 한국인을 포함한 다른 많은 민족들이 옴으로써, 혼합된 민족적 다양성을 더욱 증가 시켰다. 1억 6천만 인구 중 반 이상이 흑인 또는 흑인 혼혈로 간주되고 백만 이상의 아시아 사람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인종 차별 문제는 큰 관심 거리이다.

오늘날 브라질은 인종 차별이 아직도 민감한 문제인 나라이지만, 비록 감춰진 차별이 주로 흑인에 대해서 존재한다고는 하더라도, 인종적 관용성이 큰 나라 가운데 하나이고 법률적으로 소수 민족 집단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인종주의와 관련된 범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볼 때, 최근 몇십년 동안 큰 진전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부분, 높은 수준의 관용성은 브라질 고유 역사의 결과인 대규모의 인종 혼합에 의한 것으로, 그것 때문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냈다.

4. 정치적 측면

정치적 권리 또는 다수 선거나 비례 선거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브라질에서 태어났거나 귀화한 사람에게만 부여되고, 브라질 출생자는 대통령 피선거권과 같은 특별한 권리를 지닌다. 브라질에서는 외국인이 일시적인 또는 영구적인 거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일시적 거주권은 브라질 회사에 일자리를 두거나 종교적 포교 업무를 하는 등 일시 체류에 필요한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 시키면 얻을 수 있으며 일하는 사람은 일자리를 그만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영구적 거주권은 예를 들어 브라질에 대한 일정한 금액의 투자, 브라질인 배우자와의 결혼 또는 브라질 영토 내에서 자녀 출생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 얻을 수 있으며, 가족 결합을 나타낸다. 정부 고유 기준에 따라 불법 이민자를 사면하거나 합법 이민자에 대한 경우도 있다. 귀화는 현행 법률에 따라 연속적으로 15년 이상 브라질 내에 거주한 모든 국적의 전과 기록이 없는 외국인 및 몇 가지 특별한 경우에 허가된다.

브라질에서는 개인 납세자 명부에 등록된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하고, 개인 납세자를 증빙하는 서류를 받게 되는데, 브라질에 거주하든 아니든 매년 소득세 신고의 의무가 있다. 이런 까닭으로 사회 보험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

한국 정부는 해외 거주 교포들에게 많은 권리와 함께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한인과 한국 정부의 관계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예컨대 브라질 거주 한인은 이중 국적의 권리와 한국에서의 사회적 권리가 없고, 그런 권리를 얻으려면 브라질 영주권을 포기해야 한다. 한인 이민은 현행 법률로 인해 브라질에서 정치적 권리와 함께 정치적 권리와 함께 브라질과 한국 두 나라에서 모두 정치적 권리가 없다. 브라질 밖에 사는 브라질 이민자들과 비교해 본다면 그들은 브라질의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를 할 권리가 있다. 브라질에서는 땅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나라에 속한 하천, 하늘, 바다 및 지하도 마찬가지이다. 이민자들은 브라질에서 취업 허가를 받고 합법적 신분 보장이 되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5. 경제적 권리

인종적 편견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고용 기회는 모두에게 동등하다. 모든 것은 회사가 찾는 요구 조건에 달려 있으며 이민자가 그것을 충족시킬 조건을 갖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브라질-한국 상공 회의소 자료에 의하면, 브라질에서 외국인이 사업체의 소유주가 될 수 있게 된 때부터 한인들은 자기의 사업체를 소유하는 경향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한인 공동체의 자영업 중심주의를 감지할 수 있다. 한인 90%가 직물 분야(의류 및 옷감)에서 자영업을 하였지만 오늘날 이들의 사회 경제적 모습은 점차 변하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3,800 개의 한인 자영업체 가운데, 72%만이 직물 분야에 속하고, 나머지 10%는 의사나 변호사 등 자유 전문직, 7%는 무역, 그리고 5%는 식품업을 한다. 한인 공동체의 경제력은 매우 크고 영향력 있다. 한인 공동체는 연간 미화 15 억불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브라질 의류 협회는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여성 의류 세 개 중 하나는 한인 업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한인 공동체의 높은 경제력과 전문성의 성과를 보여준다. 많은 상점이 있는 봉 헤치루 지역은 오늘날 남미 의류 도매상의 주요 중심지이다. 정부 지원이 없어도 기업가들은 개인적 않고, 성장을 위한 대안을 찾는데, 상품 수출을 위해 연합한 기업가 집단의 이니셔티브 같은 것이 있으며, 그렇게 하여 무역 분야에서 정부 지원을 구하고 있다. 은행은 은행 대출을 위한 자체 기준을 갖고 있으며 브라질인과 외국인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외국인은 은행 대출을 얻을 수 있다. 땅은 브라질인과 외국인 모두 살 수 있다. 문선명 목사의 경우, 브라질 중서부 지역의 주, 미투 그로수 두 숲에 5만6 천 헥타르를 소유하고 있다.

6. 한국과 브라질 문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브라질 문화는 포르투갈, 아프리카, 원주민 등 세 문화의 융합을 통해 생겨났다. 현대에서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독일, 스페인, 일본, 아랍의 많은 이민 유입과 더불어 다른 여러 문화의 영향을 덧붙일 수 있다. 세기말에 접어들면서는 미국 문화의 영향이 지배적이다. 이 영향은 주로 대중들이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 매체를 가장 많이 접하는 큰 도시들에서 잘 나타난다. 받아들인 문화에 따라 몇 가지 지역적 경향도 매우 두드러진다. 그러나 중소 도시 또는 대도시 같은 몇몇 브라질 도시에서는 소비 행태, 여가 및 사회 관계에 있어서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브라질의 한인 공동체 문화는 매우 독특한데,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살면서도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한인이라 여기지만, 주류 브라질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혼합되고 희석되어 가고 있다. 브라질 사회에서 한국 문화를 전파하면서, 한인 공동체 안팎으로 한인 정체성을 지키려 하는 많은 단체들이 이것에 이바지하고 있다.

포르투갈어는 브라질의 공용어이지만, 포르투갈과 그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나라에서 쓰이는 말과 음운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화자의 수적인 면에서는 원주민과 아프리카인의 언어 외에 세계 여러 언어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문학의 중요성에서는 모든 형태의 포르투갈어 중에서 어떠한 것도 브라질 포르투갈어만큼 중요성과 발전의 정도에 다르지 못 했다. 포르투갈어는 배우기 가장 어려운 언어 가운데 하나이고, 최초 이민자들이 이 새 언어를 배우기는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르도록 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고 의사 소통 수단으로 한국어만 쓰게 되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안 하기는 어려웠다. 오늘날은 한국어를 못 하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는데, 때때로 가족 사이의 불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은 언어 뿐만 아니라, 사라지기 시작한 관습 때문에 생기기도 했고, 세대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 젊은 사람들한테는 나이 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행동과 언어가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인과 브라질인이 결혼할 때 한인 사회의 보수성을 엿볼 수 있다. 이민의 역사가 길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한인들은 아직 구별을 두지만, 브라질인들은 이제 이런 인종 관계의 유형에 대해 생소해 하지 않는다. 한인 공동체는 일부 구성원의 꿈으로 이루어진 비영리 단체인 브라질 한인 교육 협회를 갖고 있는데, 1992년에 사용 파울루 한인 학교를 만들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로 "Colégio Polilogo"로 알려져 있는, 한국 정부와 한인 공동체가 동일한 부분으로 지원을 한 미화 7백만 불의 프로젝트로서, 양국 학과 과정에 따라 한인 및 후손 뿐만 아니라 브라질인에게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여, 브라질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것은 오늘날은 완전히 시도할 수 없는 대담한 기획으로 이제는 정규 학생 320명과 언어 학교 학생 500명이 있다. 교육 체계와 기반 시설은 많은 투자를 받아, 브라질 최고 수준의 학교가 되었고,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현상황 및 잘못된 계획으로 인해 대부분 어떤 면에서 다소 어려운 상태에 있는 브라질 교육 체계와 대비가 된다.

한인 청소년들의 통합 및 브라질 사회에서의 한국 문화 전파에 있어 훌륭한 일을 전개하는 브라질 한인 대학생 협회는 '하나'와 같은 기획과 행사를 통해 해마다 중남미에 있는 약 300명의 학생을 모아 한인 후손들의 국제적 통합을 위한 공간을 열고, 1998년부터 유지된 대학생을 위한 언어 학교와 같은 교육적인 일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또한 많은 독립 언어 학교가 있어서, 한인 청소년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맡고 있다.

젊은 브라질 한인 이민 역사와 아직 남아 있는 강한 문화 정체성으로 인해, 이중 교육은 한인 공동체 안에서 시간이 지나면서도 유지되는 특징이다. 그러나 양립 불가능할 수도 있는 다른 특성과 모습을 지닌 두 개의 다른 문화 세계에 맞닥뜨리는 젊은이들에게는 때때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지만, 후손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뿌리를 지키기 위한 형태로서, 부모들이 많이 사용한 교육 모델이었다.

이민자들도 브라질인에게 부여된 많은 권리를 갖고 있지만 어떤 것은 이민자가 아닌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적으로 공중 보건 기관 및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이민자들에게 득이

된다는 점이다. 19세기부터 브라질은 공식 종교가 없지만 대부분 카톨릭교를 믿는다 할 수 있고 자주 “세계에서 가장 큰 카톨릭 국가”라 불렸다. 카톨릭교가 아닌 종파, 개신교, 심지어 아프리카에 근원을 둔 종교를 포함하는 비기독교의 확산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말은 약간의 과장이라 하겠다.

문화 혼합과 마찬가지로, 천주교 그리고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예수 재림교와 같은 전통적 개신교, 오순절교, 유대교, 심령주의 및 아프리카 종교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종교를 볼 수 있다. 복음교는 브라질에서 상당한 성장을 하였다. 매우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은 한인 공동체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비율을 볼 수 있다: 30% - 개신교; 25% - 오순절교; 15% - 카톨릭교; 10% - 불교; 20% - 기타 또는 무교.

한인 공동체의 상당 부분은 한국 문화의 많은 영향을 받은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지역의 풍습에 적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몇 가지 보기가 있는데,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 한국식 풍습과 같은 것으로, 이제는 한국식이라 여겨지지 않을 만큼 어릴 때부터 경험을 하여 생활 속에 자리잡았다. 다른 더 오래된 공동체에서 그랬듯이, 그런 한국적 생활 방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옆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것이라 단정 짓을 수는 없는데, 매우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브라질 한인 공동체의 과거사는 긴 고난의 역사와 생존 투쟁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것은 최근의 역사라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대로 있다. 1 세대 이민자들은 많은 희생을 치르며 새 지평을 연 커다란 공로가 있고, 새로운 세대가 성장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과거에 이민자들이 일하는 것 말고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날 아들딸들은 공부할 수 있는 경제적 실제적 기회를 갖고 있다. 지난날 브라질인과의 의사 소통 부족으로 관계의 장벽이 있었다면 오늘날 공동체는 적절한 방식으로 적응을 했다.

그래서 초기 이민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신세대를 더욱 잘 교육하여, 브라질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더 훌륭한 브라질 건설에 이바지하면서도 조상들의 수 천년 역사를 한 시라도 잊지 않는다면 한인 공동체는 앞으로 나아가고 건전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사상가 라파니가 말했듯이, “개인의 뿌리는 모든 인간의 요람이며 그것 없이 인간은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과거의 결과물인 현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POLÍTICA SOCIAL NA COMUNIDADE ESTRANGEIRA 외국인 공동체에 있어서 사회 정책

해외 한인 공동체의 사회문화 연구는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상세하고 특별한 연구를 요하는데, 이민의 여러 조건과 시기로 인해 한국 사회와의 차이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다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세계 각지에 한인 후손들이 살고 있고 브라질에는 사용 패율로 주로 집중되어 있다.

0. 한인 후손

브라질은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원주민 등 많은 인종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나라인기 때문에, 예를 들어 높은 인종적 관용성과 같이 모든 사회 분야에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왜냐하면 국적의 획득이 비자발적이고, 개인이 태어난 곳이 영토적 기원으로 결정이 되어, 여기서 태어나 자손이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인종 혼합에 흡수되도록 하였다.

한인들한테도 다르지 않았다. 1963년2월 처음 이민이 온지 이제 거의 40 년이 되었으며 점차 브라질의 모습에 통합이 되어 갔는데, 부분적으로는 지난 세기 초부터 브라질에 이민 온 일본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쉬워진 점도 있다. 물론 이민의 역사가 길지 않은 관계로 아직 양측 사이에 몇몇 장벽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점점 더 희석되어 가고 있다.

느린 통합을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 수 있는 한 가지 문제는, 다른 민족의 경우에도 이민사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 브라질 영토의 국적 체계에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는 혈통에 의한 민족성에 더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태평양을 건너온 일세대 이민자들은 물론이고 공동체 구성원이 가진 뿌리에 대한 높은 정체성 때문이다. 브라질에서는 태어난 곳이 브라질이면 브라질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한테는 브라질에서 태어났어도 한인의 자식이면 한국 사람이다. 한국을 떠난 다음 태어난 많은 젊은이들은 브라질에서 태어났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한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반면에 나이가 들면서 뿌리에 관심을 갖게 되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다.

1. 브라질의 한인 공동체

여러 가지 이유로, 브라질 법은 외국인 문제에 가장 잘 접근하는 법이며,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많은 특권과 권리를 그들에게 부여하고 보장한다. 기본적 권리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법적 차이는, 외국인 부모라 하더라도 브라질에서 태어났거나 브라질 부모 사이에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몇 가지 형태의 법적 절차를 통해 브라질 국적을 취득한 브라질인에게 해당되는 정치 군사적 권리 말고는 없으며, 예컨대 투표권 같은 몇 가지 권리는 외국인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장벽을 젊은 사람들한테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개 한인 공동체는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로 한인으로 여기는데, 그래서 기대되는 바에

맞는 행동과 자세를 바라게 된다. 그래서, 브라질인 배우자나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도 한인 공동체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 분단 이전부터 이민이 있던 러시아, 중국, 일본과 같은 사례는 없다.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던 시절 일본 이름과 서류를 갖고 일본 이민과 함께 온 개별적인 한인들도 있는데, 그들은 여기에 도착한 다음에 상황이 여의치 않았지만 뚜렷한 한인 정체성 유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정착했음에도 브라질 한인 공동체의 정서는 조상의 가치를 보존하려 하고 한국으로부터 그렇게 존중 받기를 바란다.

2. 공동체 수

브라질 한인 공동체는 세계의 주요 10개 공동체 중 하나이고, 미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중국, 호주, 멕시코 다음에 있다. 8~90년대에 경제 불안정으로 인한 출국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에는 주로 사용 파울루를 중심으로 4~5만 명의 한인과 후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남쪽의 포르투 알레그리, 북쪽의 나탈, 인구가 많은 허우 지 자네이루와 벨로리온치 같은 도시들에서도 한인들이 있다.

3. 브라질 한인 공동체의 역사

공식적인 최초 이민 일자는 1963년 2월 12일이며 그 때 17 가구가 몇 주의 항해 후 상투스 항구를 통해 들어왔다. 이민 물결은 브라질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합한 서류를 접수한 이른바 합법적 이민들과 함께 60년대 말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이 시기 뒤에, 한국에서 직접 오든지 아니면 남미 이웃 나라 국경을 통해서든지 불법 이민들이 몰려 왔는데 브라질 정부의 사면 조치로 이들을 보았다. 90년대에는, 불확실하고 불법적인 방법이지만, 초기 이민자와 같은 마음으로 더 좋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온 중국 출신의 조선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처음 브라질에 온 한인들은 1963년에 온 17 가구가 아니라 한국 분단 전 1948년에 도착한 38명의 망명자들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밖에도 1963년 전에 몇몇 한인들이 개별적으로 브라질에 오기도 하였다.

4. 외국인을 위한 법률

외국인을 위한 특정한 법률이 있지는 않지만 연방 헌법에서 시 법률까지 언급이 되고 법의 목적이 된다. 1980년 8월 19일 법률 제 6815 호 (1981년 12월 9일 법률 제 964 호로 변경)는 브라질 내 외국인의 법적 신분을 규정하고 외국인 위원회를 만들었다 (노동부와 관련 있으며, 이민 활동을 조정 및 통제한다). 또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문제도 다룬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 브라질 거주 외국인은 헌법과 법률의 태두리 안에서 브라질인에게 인정된 모든 권리를 누리고, 허가된 비자의 유형에 따라 노동의 권리, 경제 활동 영위 및 교육 기관 등록이 몇 가지 제한과 함께 외국인에게 허용된다. 예컨대 여러 가지 중에서 언론사, 방송사의 소유주가 되거나 어업, 광물 자원의 채굴, 체광.

수력 발전의 이용이 금지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제한도 있다. 영토에 들어오도록 허가 받은 외국인은 브라질에서 정치적 성격의 활동을 할 수 없고, 직간접적으로 행정에 관여할 수 없으며, 특히 비록 목적상 동포들에게만 본국 정당들의 이념, 계획 또는 활동을 선전 또는 전파한다고 해도 모든 정치적 성격의 단체나 기관은 조직, 구성 또는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은 특히 한인 이민이 브라질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정치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외국에서 거주하게 되면 그 권리를 잃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 밖에 사는 브라질 교민들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투표를 하고 정치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어서, 10 월에 있었던 최근의 대통령 선거에서 볼 수 있듯이 영사관에서 투표를 한다.

정부 차원의 외국인 지원 기관의 존재에 관해서 볼 때, 2000년에 외국인 공동체를 위한 국회 위원회인 CONSCRE가 설립되었는데, 사용 파울루 주 의회가 만든, 외국인 지원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단체로서, 공공 기관과 함께 프로젝트와 활동을 정비하는 집단에 의하여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 2001~2년의 회장은 우연히도 브라질-한국 상공 회의소 회장인 한국인 최태훈 씨이다. 브라질에 있는 외국인을 지원하는 비정부 기구(NGO)도 있다.

출국과 입국은 연방 경찰이 규제를 하고, 각국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있다. 브라질 법률에 따르면, 평화 시기에는 법률에 맞는 조건이라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어떠한 외국인도 브라질에 들어와 머무르거나 나갈 수 있다. 나라에 따라서 비자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한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요구 조건 뿐 아니라 보장되는 이득에 있어서 서로 다른 비자 허가의 사례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I - 문화 여행 또는 연구 목적;

II - 업무상 출장;

III - 예술인 또는 운동선수의 신분;

IV - 학생의 신분;

V - 계약에 따른 또는 브라질 정부를 위해 일하는 과학자, 교수, 기술자 또는 다른 범주의 전문인;

VI - 외국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통신사의 특파원 신분;

VII - 종교 사제 또는 종교 단체 구성원의 신분.

해외 영사관이 허가하는 관광 비자로는 몇 번이고 브라질에 들어올 수 있고 한 기간에 90일을 넘지 않으며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지만 1년에 180일을 넘을 수 없다. 한국과는 2001년에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브라질에 거주하지 않는 한국인이 3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고 체류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브라질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RNE(외국인 등록증)라 하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 성격의 문서가 있는데, 필요한 경우 몇 번이고 출입국을 할 수 있는 시민권을 부여하면서도, 본국의 여권을 쓸 수 있도록 한다. 영구 비자는 브라질에 결국 정착하려 하는 외국인에게 허가될 수 있다. 이민은 기본적인 이민의 목적은 모든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노동력을 불러 모으고, 특정 분야에 필요한 기술과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영구 비자를 취득하려면 국립 이민 위원회에서 정한 이민 선별 기준에 명시된 특별한 요구 사항을 충족 시켜야 한다. 영구 비자의 허가는 5년을 넘지 않는 기한으로 특정한 활동의 영위와 영토 내의 일정 지역에 정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외국인은 난민 자격으로 입국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이 따로 존재한다.

영토 밖으로 나가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 비자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인이 부정기적으로 출입국을 하면서, 규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자발적으로 영토에서 나가지 않으면 추방 조치를 위하게 된다. 국가 안보, 사회 정치 질서, 공중 도덕 및 국민 경제에 어떠한 형태로든 위해를 가하거나, 행동이 국익과 사회 공익을 저해하는 외국인도 추방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법에 따라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다:

- a) 브라질 입국 또는 영주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한 사기;
- b) 추방을 하는 것이 권장되지는 않지만, 법을 위반하면서 영토 내에 들어왔을 때 나가도록 정해진 기한 안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 c) 유랑 또는 구걸을 하는 경우; 또는
- d) 법으로 특히 외국인에게 금지된 사항을 무시하는 경우.

이전에 다른 바와 같이, 외국인은, 나라 안에 거주하지 않는 이에게도 확대되는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과 같이 브라질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귀화자에게 따르는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인은 정치적 권리가 없다.

브라질 법률은 연속적으로 15년 이상 브라질 내에 거주한 모든 국적의 전과 기록이 없는 외국인 및 몇 가지 특별한 경우에 귀화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귀화를 인정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I - 브라질 법률에 따른 시민 능력;
- II - 브라질에서 영주권자로 등록;
- III - 귀화 신청 바로 전 최소 15년 동안 영토 내에서 지속적인 거주;
- IV - 귀화자의 조건으로 여겨지는 포르투갈어 읽고 쓰기;
- V - 자신 및 가족의 유지에 충분한 재산 또는 직업의 영위;
- VI - 합법적 절차;
- VII - 브라질 또는 국외에서 범죄에 의한 전과 기록 또는 고소, 고발의 부재
- VIII - 좋은 건강

귀화하려는 이가 다음의 한 가지 조건을 충족 시키는 경우 일정 거주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 I - 브라질인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을 경우;
- II - 브라질인의 자녀일 경우;
- III - 법무부 장관이 판단할 때, 브라질에 상당한 공헌을 했거나 할 수 있을 경우;
- IV - 전문적, 학술적, 예술적 능력 때문에 추천되는 경우; 또는

V - 브라질에서 최대 기준 가치의 적어도 천 배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동일한 가치의 자금을 보유하는 기업가, 또는 공업 또는 농업 활동의 개발을 주로 영구적으로 지향하는 기업 또는 시민 단체에서 최소한 동일한 가치의 전체 주식을 소유한 사람.

5. 외국인 관련 정부 단체

한국 정부 쪽이든 브라질 정부 쪽이든 외국인 관련 문제들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목적만으로 있는 정부 조직이나 기관은 없다. 다른 한 편, 사용 파울루 주 의회의 결의에 따라 창립된 CONSCRE(주 의회 외국인 공동체 위원회)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설립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고, 그 활동은 공공 기관과 함께 기획을 조정하는 단체들이 하고 있다. 한인 공동체는 브라질 내에서 정치 참여를 넓혀가고 있는데,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기관 및 특정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적인 점이다.

6. 이민자의 유형

개별 사례는 독립적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브라질 영주 또는 귀화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과 해외에 사는 브라질인 사이에 정확한 비교를 할 수는 없다.

7. 한인 정체성 유지

많은 한인들이 브라질에서 말을 배우고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볼 때, 공동체 구성원의 이득을 위한 일 말고도 한인 정체성의 유지는 한인 공동체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 이것을 위해, 브라질 법이 허용하는 바와 같이, 이런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의 작업들이 있다. 공식적 주요 기관은 브라질 한인 협회인데, 모든 한인과 후손을 모으고, 현재는 회장 권명호의 경우와 같이 어릴 때 브라질에 와서 공부한 이민 1.5세들이 이제 지휘를 한다. 브라질에서는 외국인들이 문화, 종교, 여행, 자선 또는 조력 제공의 목적으로 단체를 만드는 것이 합법적이라, 사회, 스포츠 동아리를 만들고 같은 목적을 지닌 다른 단체들을 만들어 민족적으로 중요한 기념일에 모여 행사를 가지는 경우가 있다.

브라질 한인 협회 외에도, 어떠한 식으로든 도움을 주려 하는 여러 이니셔티브와 단체가 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 브라질 한인 교육 협회가 갖고 있는데, 1992년에 사용 파울루 한인 학교를 만들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주로 "Colégio Polílogos"로 알려져 있는, 한국 정부와 한인 공동체가 동일한 부분으로 지원을 한 미화 7백만 불의 프로젝트로서, 양국 학과 과정에 따라 한인 및 후손 뿐만 아니라 브라질인에게도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여, 브라질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고, 브라질-한국 상공 회의소는 한인 공동체 구성원이 관여하는 경제적 이익에 신경을 쓴다.

한인 후손의 국제적 통합을 위한 공간을 만들 목적으로 중남미 몇몇 나라의 한인 대학생 대략 300명을

집결 시켜 '하나'와 같은 기회 및 행사를 갖고 브라질 사회에서 한국 문화의 전파 및 한인 청소년의 홀륭한 통합 작업을 전개하는 브라질 한인 대학생 협회가 있다. 또한 어떤 식으로든 한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스포츠, 예술가 협회와 같은 사회적 성격의 기관도 있다.

공동체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한인 정체성의 상실이다. 뿌리와의 고리를 조금씩 잃어가는 것은 브라질 한인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가족 갈등, 문화 충격, 사회 부적응 등은 이런 현실의 귀결로서, 각 개인에게 내재하는 개인적 가치와 같은 많은 요인들의 결합의 결과이다.

초기 이민자들이 경제적 안정을 찾으면서 새 나라에 정착하려는 노력을 하는 동안에, 생계 유지에 집중된 노력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잊혀져 갔다. 이 문제들 중 하나는 한인 정체성의 유지였다. 관습과 언어는 사라지기 시작했고, 세대 사이에 장벽을 만들어, 젊은 사람들한테는 나이 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행동과 언어가 완전히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인 후손들이 한국적 가치와 멀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일로, 포르투갈어를 잘 못 하는 부모와 모어를 모르는 자녀들의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이 상황을 분석하면, 부모와 자식이 같은 곳에 살면서도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문화 충격과 결속력 상실은 큰 상처를 주게 된다. 브라질 문화의 어떤 측면은 부모들이 요구하는 행동과 양립할 수가 없다. 분명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사회적 인정과 적합성이 아니라 나이가 주요 기준인 기준의 위계 질서와 그에 따른 존중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브라질 문화에서는 이런 나이 차이가 상관없고, 존중은 나이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서 이 나라에 있는 거리낌 없는 의사 소통 방식에 당혹스러워 하기도 한다.

상황을 더욱 나쁘게 만드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부과하고 요구하는 가치들이 무시 당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미성숙하고 존경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한인 후손들이 자기 뿌리에 무관심한 것이 당연하게 보인다. 한국과 관련된 일은 지역의 관심사 다음에 놓이게 된다.

가치의 혼합은 사실 매우 혼란스러우며, 가족과 사회와 관계된 특성과 개성의 측면에서 한인 후손들은 정체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게 된다. 이 밖에도 주변 환경과 행동 양식에 대해 세대 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자연적 차이도 있기 때문이다. 아마도 전후 시대를 거친 부모들은 다문화적이고 국제적인 환경에서 자기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교육할지 모를 것이다.

많은 경우에서, 한인 공동체로부터 결국 고립되고, 동시에 브라질 사회에도 통합하지 못한 한인들을 볼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 흔한 상황이다. 다행히, 많은 이들은 자기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대개 청소년기가 끝날 때 다른 브라질 친구들과 다른 습관, 시각, 문제를 자각하면서 일어난다.

사실, 뿌리를 완전히 알지 못하면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정체성을 모르면 사회성에서 문제가 생기고 만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다. 모든 나라는 가치를 인정 받을 긍정적 면과 피해야 할 부정적인 면이 있다. 브라질 문화에 흡수된 이런 긍정적 특징은 브라질 한인 공동체의 통합과

성장에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기 때문에, 정체성 유지를 위한 모든 일이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브라질 사회로의 통합도 불가피하고 역시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브라질의 한인 후손은 이제 3 세대에 접어들어 초기 이민자들의 손자들이 청소년이 되었다. 공동체의 특징은 매우 역동적으로 나타나고 60 년대부터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전에는 모두가 웃과 웃감 장사를 하면서 생계 유지를 했다면, 이제는 많은 한인 의사, 기술자, 변호사를 만날 수 있다. 과거에는 언어로 인해 브라질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면, 오늘날 한인들은 이제 사용 패턴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다정다감한 태도로 잘 알려져 있다.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하면서 사회적 성숙을 보이고 있다.

이 상황이 더욱 좋아지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1) 해외 한인들에게 이중 국적을 부여하여, 브라질인임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 한국인으로 살면서 브라질보다 한국에 더 큰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한국 자체가 외교에 있어서 영향력을 증대 시키게 되고, 한국 정치 참여의 권리를 거부하지 않은 해외 한인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게 된다. 그리고 (2) 두 나라가 상호적으로 통합될 수 있고 그래야 하는 긍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교육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교류를 늘리면서, 한국 정부가 한인 공동체의 경제, 사회, 정치 활동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고, 한인 공동체의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 영사관의 자치성을 증가 시킨다.

8. 정치적 권리

전에 다루었던 바와 같이, 외국인은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갖고 있지 않으며 정치적 성질의 활동을 할 수 없고 행정부에서 일할 수 없다. 한국 이민자는 현행 법률로 인해 브라질에서 정치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에서도 없기 때문에 한국 밖에서 거주하게 되면 아무런 정치적 권리가 없다. 브라질 밖의 브라질인 이민자들의 상황을 예로 들어 비교할 수 있는데, 그들은 다른 나라에 살더라도 브라질의 정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투표를 할 권리가 있다.

POLÍTICA SOBRE PEQUENAS COMUNIDADES ESTRANGEIRAS

소수민족정책

O Brasil é um país multiracial, caldeirão de várias culturas dos mais diferentes lugares do mundo. Assim como muitos outros povos que para cá imigraram, os coreanos influenciaram o país de diversas formas: na culinária, folclore e tradições, na esfera social, econômica e política.

Hoje, é difícil imaginar como seria o Brasil sem os imigrantes que vieram dos mais diferentes lugares do mundo, e também da Coréia do Sul. Hoje, esta comunidade tem importância indiscutível para o país, visto que nas mais diferentes áreas podemos notar a sua participação. No contexto mundial globalizado, representa uma importante nação, e tem se destacado de maneira notável.

1. Formação da comunidade coreana no Brasil

A história da comunidade coreana no Brasil completa oficialmente 40 anos no dia 12 de Fevereiro de 2003. A imigração coreana ao Brasil começou com a chegada de 17 famílias no porto de Santos no dia 12 de Fevereiro de 1963, após semanas de viagem. E a entrada de imigrantes continuou firme até o início da década de 70, quando começaram a entrar muitos coreanos em situação ilegal, entrando por diversos pontos da fronteira brasileira na América do Sul.

Existem relatos de que os primeiros imigrantes coreanos seriam coreanos que viviam no Japão, e que vieram juntos com o fluxo migratório japonês, muito forte no inicio do século XX. Teriam nome e identidade japonesa, mas aqui chegando apresentavam-se como coreanos. Além desses coreanos, no período de guerra e da divisão da Coréia, exilados militares e políticos vieram para o Brasil, formando um pequeno núcleo.

A trajetória da comunidade foi irregular, com fluxos esporádicos e entrada de muitos imigrantes ilegais em busca de estabilidade econômica. Um caso interessante que pode

ser citado é a entrada de imigrantes chineses de origem coreana, descendentes de coreanos da época Chosun que imigraram primeiramente para a China, e que no Brasil também são considerados membros da comunidade coreana.

Hoje a comunidade coreana, apesar de ainda se manter fechada socialmente em alguns aspectos, apresenta uma tendência natural a se misturar com o resto da sociedade em que está inserida, devido à própria dinâmica social. Assim, podemos ver agora muitas famílias onde um dos cônjuges é brasileiro nato, algo impensável na comunidade no começo da sua história.

2. Classificação da comunidade coreana

A comunidade coreana veio a se estabelecer após o periodo de formação inicial da população brasileira, que se deu durante os séculos XV e XVIII e incluiu portugueses, indígenas e negros.

A partir do início do século XX, o Brasil recebeu muitos povos imigrantes, devidos a diversos motivos: busca de melhores condições de vida, fuga devido a guerras, política externa de governos entre outros.

Com os primeiros imigrantes coreanos não foi diferente. Eles vieram em busca de um lugar para reconstruir suas vidas, pois a Guerra da Coreia destruiu boa parte do País, tanto no aspecto econômico, social e de infra-estrutura.

Assim, a comunidade coreana se classifica como imigrantes.

3. Composição étnica brasileira

O Brasil foi descoberto em 21 de Abril de 1500 por navegadores portugueses, que foram os primeiros imigrantes que entraram em suas fronteiras. Muitos povos vieram para cá até o início do século XX, quando houve um grande fluxo de imigrantes vindos de várias partes do mundo.

De 1500 a 1900, além dos índios que já estavam estabelecidos e dos descobridores portugueses, espanhóis, holandeses, ingleses e franceses, juntamente com os escravos

negros trazidos durante os séculos XVI e XVII compunham o cenário social do país. Após 1900, italianos, alemães, japoneses, libaneses, árabes, chineses, e muitos outros povos, incluindo o coreano, vieram para aumentar ainda mais a já misturada diversidade étnica. Num cenário como este, aonde mais da metade da população de 160 milhões de habitantes é considerada negra ou parda e existem mais de 1 milhão de habitantes de origem asiática, o tema discriminação racial é de grande interesse.

O Brasil é hoje um dos países aonde a discriminação racial é um tema ainda delicado, mas que conseguiu grandes avanços nas últimas décadas, a ponto de podermos afirmar que apesar da discriminação velada que existe, principalmente aos negros, é um dos países aonde existe maior tolerância racial, com leis que garantem direitos aos grupos étnicos, além de prever penas para crimes relacionados ao racismo.

Em grande parte, a alta tolerância é devida à grande miscigenação que ocorreu, fruto da própria história brasileira, que criou um ambiente propício para tal.

4. Aspectos políticos

Os direitos políticos, ou seja, o direito de votar e de ser candidato em eleição majoritária ou minoritária, são reservados aos brasileiros natos ou naturalizados, sendo que os natos tem alguns direitos específicos, como o direito de poderem ser candidatos a Presidente em uma eleição, por exemplo.

No Brasil existem algumas maneiras do estrangeiro conseguir uma identidade temporária ou então, permanente.

A identidade temporária é conseguida com o preenchimento de algum dos requisitos para a permanência temporária, como o vínculo de trabalho com alguma empresa brasileira ou o trabalho missionário religioso, sendo que o trabalhador deve voltar ao seu país de origem assim que cessar o seu vínculo de trabalho.

Já a identidade permanente, é conseguida em alguns casos específicos, como por exemplo, o investimento de determinada quantia no país, o casamento com algum cônjuge brasileiro, ou o nascimento de um filho ou filha em território brasileiro, caracterizando caso de reunião familiar. Existem também os casos de imigração legal ou anistia concedida a

imigrantes ilegais, que o governo concede de acordo com critérios próprios.

A naturalização é permitida a estrangeiros de qualquer nacionalidade residentes no Brasil há mais de 15 anos ininterruptos e sem nenhuma condenação penal, além de outros casos específicos, de acordo com a legislação vigente.

No Brasil, os impostos são pagos por qualquer pessoa que esteja registrada no Cadastro de Pessoas Físicas, sendo que recebe um documento que o identifica como contribuinte pessoa física , o CPF, perante a Secretaria da Receita Federal, e todos os cadastrados tem a obrigação de fazer a Declaração Anual de Imposto de Renda, sejam ou não residentes no Brasil. É por essa razão que os benefícios sociais são abertos a todos.

A relação dos coreanos com o governo coreano é limitada, visto que a Coréia não oferece muitos direitos aos imigrantes estabelecidos no exterior. Assim o coreano residente no Brasil, por exemplo, não tem direito a dupla cidadania e a direitos sociais na Coréia, para o qual tem de renunciar à permanência brasileira para poder obtê-los.

O imigrante coreano não possui direito político no Brasil também, devido à legislação vigente, e assim, não tem direitos políticos nem no Brasil e nem na Coréia. Como comparação poderíamos citar a situação do imigrante brasileiro fora do Brasil, que mesmo em lugares distantes, contanto que se tenha uma repartição pública que possibilite, tem o direito de votar e participar do processo político do País.

No Brasil, não existe o direito sobre a terra, pois tanto o espaço interno, aéreo, marítimo e o subsolo pertencem ao país.

Os imigrantes, desde que tenham permissão para trabalhar e estejam em situação regular e legal no país, podem trabalhar em qualquer área.

5. Direitos econômicos

As chances de emprego são iguais para todos, visto que o preconceito racial é bastante tolerante. Tudo depende dos requisitos procurados pela empresa, e se o imigrante tem condições de preenche-las.

Mas segundo dados da Câmara de Comércio e Indústria Brasil-Coréia, pode-se notar o empreendedorismo da comunidade coreana, visto que desde o início da imigração, os coreanos

seguiram a tendência de possuir um negócio próprio, a partir do momento que no Brasil estrangeiros podem ser proprietários de firmas.

Chegou-se a um ponto que 90% dos coreanos eram proprietários de estabelecimentos na área têxtil (roupas e tecidos), mas hoje em dia o perfil econômico e social dos mesmos vêm mudando gradativamente. Segundo dados mais recentes, dos 3.800 estabelecimentos de propriedade coreana, apenas 72% pertencem ao ramo têxtil, sendo o restante dividido em 10% para os profissionais liberais como médicos e advogados, por exemplo, 7% no ramo de comércio exterior, e 5% no ramo de alimentação.

O poder econômico da comunidade coreana é realmente grande e influente. Estima-se que a comunidade coreana movimente mais de US\$ 1,5 bilhões ao ano, sendo que a ABRAVEST, Associação Brasileira de Vestuário calcula que de cada 3 roupas femininas produzidas no Brasil, 1 veio das mãos de algum estabelecimento coreano, mostrando o resultado da alta especialização conseguida e do poder econômico da comunidade.

A região do Bom Retiro, onde boa parte das lojas se localizam, é hoje o maior centro atacadista da América Latina em vestuário. E a falta de incentivo governamental não desanima os empresários, que assim buscam novas alternativas para o crescimento, como é o caso da iniciativa de um grupo de empresários que se uniram para exportar seus produtos, buscando assim benefícios do governo na área de comércio exterior.

Os bancos possuem critérios próprios para empréstimo bancário, e não fazem distinção entre brasileiros e estrangeiros. Assim, o estrangeiro pode conseguir empréstimos bancários, desde que observados esses critérios.

A terra pode ser comprada tanto por brasileiros ou por estrangeiros. Podemos ilustrar isso com a situação do Reverendo Moon Sun Myong, que possui 56 mil hectares em Mato Grosso do Sul, Estado localizado na região Centro-Oeste do país.

6. Culturas coreana e brasileira

Vista de uma perspectiva histórica, a vida cultural brasileira nasce da confluência de três culturas: a portuguesa, a africana e a indígena. Na modernidade, agregam-se influências de várias outras culturas, com a chegada de grandes massas de imigrantes italianos, portugueses, alemães, espanhóis, japoneses e árabes. No quadro do fim do século, predomina a influência da cultura

americana. Essa influência é mais notável nos grandes centros urbanos, onde as massas estão mais expostas aos meios de comunicação de massa, principalmente da televisão.

Algumas características regionais são bastante fortes, de acordo com a influência recebida. Mas qualquer cidade brasileira, de médio ou grande porte, apresenta certamente comportamentos muito semelhantes nos hábitos de consumo e lazer e no relacionamento social.

A cultura da comunidade coreana no Brasil é bastante autêntica, visto que os seus membros se consideram coreanos, apesar da distância e do lugar fora da Coréia onde estão morando, algo que vem se misturando e diluindo aos poucos com o tempo, devido ao próprio fato da influência da cultura brasileira dominante.

Para isso, contribuem as muitas entidades que buscam guardar a identidade coreana através dos tempos, dentro e fora da comunidade coreana, difundindo a cultura coreana na sociedade brasileira.

O português é a língua oficial do Brasil, de prosódia muito diferente da língua falada em Portugal e nos países africanos colonizados por Portugal. De todas as formas do português, nenhuma chegou ao grau de importância e de desenvolvimento da língua falada no Brasil, seja pelo número de falantes que abrange, seja pela importância de sua literatura, mas bastante influenciada por diversas linguagens do mundo, além de dialetos indígenas e africanos.

O português é uma das línguas mais difíceis para serem aprendidas, e foi muito difícil para os primeiros imigrantes aprenderem essa linguagem nova, o que de certa maneira influiu para que se fechassem dentro da comunidade, utilizando apenas o coreano como forma de comunicação. Assim, na comunidade coreana até a pouco tempo atrás era difícil de algum membro não falar o coreano. Hoje em dia podemos ver jovens que não conhecem a língua coreana, o que às vezes causa conflitos familiares.

E isso não ocorreu somente com a linguagem, mas também com os costumes que começaram a desaparecer, criando barreiras entre as gerações, pois os mais velhos exigem um comportamento e linguajar que sob o ponto de vista dos jovens é totalmente estranho.

Podemos observar o conservadorismo da comunidade coreana quando ocorrem casamentos de coreanos com brasileiros. Por enquanto, ainda é forte a discriminação por parte dos coreanos causado pelo fato da imigração ser muito recente, pois os brasileiros já não mais estranham esse tipo de relação inter-racial.

A comunidade coreana possui um órgão educacional, a Associação Brasileira de Educação Coreana, entidade sem fins lucrativos criada a partir de um sonho visionário de alguns membros da comunidade coreana, quem em 1992 criaram e até hoje mantém a Escola Coreana São Paulo, mais conhecido como “Colégio Polilogo”, um projeto de US\$ 7 milhões custeado pelo governo coreano e pela comunidade coreana em partes iguais, e que dedica-se a oferecer ensino de alto gabarito não só a coreanos e descendentes em um currículo binacional, mas também a brasileiros, contribuindo assim para o desenvolvimento da educação brasileira.

Este é um projeto audacioso, que hoje não está em plena capacidade de uso, mas que já possui 320 alunos na escola regular e 500 alunos na Escola de Línguas. A infra-estrutura e o sistema educacional receberam grandes investimentos, o que o torna uma escola de primeiro nível no Brasil, o que o faz contrastar com a maior parte do sistema educacional brasileiro, composto pela rede pública e pela rede privada, e que devido a circunstâncias e ao mal planejamento, hoje de maneira geral é um pouco precária em certos aspectos.

É interessante citar que a Associação Brasileira dos Universitários Coreanos, que desenvolve um excelente trabalho de integração da juventude coreana e difusão da cultura coreana na sociedade brasileira, com projetos e eventos como o Hana, que reúne anualmente aproximadamente 300 universitários coreanos em algum País da América Latina com o objetivo de aproximar e abrir espaço para a integração internacional de descendentes coreanos, também desenvolve trabalhos de cunho educativo, como a Escola de Línguas para universitários mantida desde 1998.

Também existem muitas escolas de língua independentes, que cuidam da tarefa de ensinar a língua materna para os jovens coreanos.

A dupla educação é uma característica que se mantém através dos tempos na comunidade coreana, devido ao pouco tempo da história da imigração coreana no Brasil e devido também ao forte sentimento de identidade cultural ainda remanescente.

Mas às vezes pode causar certa confusão ao jovem, que se vê diante de dois mundos culturais diferentes, com características e pontos diferentes que podem ser incompatíveis. No entanto, tem sido um modelo de educação muito utilizados pelos pais, como forma de manter as raízes da Coréia nos descendentes.

Os imigrantes têm direito a muitos benefícios concedidos aos brasileiros, mas alguns são exclusivos para a população não imigrante. Os mais importantes, como previdência pública, atendimento na rede de saúde pública e outros podem ter como beneficiários os imigrantes.

Desde o século XIX o Brasil não possui religião oficial. Pode-se afirmar que é um país predominantemente católico, e já foi muitas vezes apresentado como “o maior país católico do mundo”. Essa afirmação, entretanto, contém um certo exagero, se for considerada a proliferação de crenças não-católicas, de feição protestante, ou até mesmo não-cristãs, se englobadas as religiões de origem africana.

Assim como a mistura de culturas, podemos encontrar diversos tipos de religião, como o Católico, as igrejas protestantes tradicionais como o Batista, Presbiteriano, Metodista e Adventista, além de Igrejas Pentecostais, Judaísmo, Espiritismo e Religiões Africanas. As Igrejas Evangélicas têm tido um crescimento considerável no Brasil.

Na comunidade coreana, altamente religiosa, podemos encontrar uma proporção aproximada no seguinte quadro: 30% - Igrejas Protestantes; 25% - Igrejas Pentecostais; 15% - Igreja Católica; 10% - Budismo; 20% - Outros ou nenhum.

Boa parte da comunidade coreana vive uma vida bastante influenciada pela cultura da Coréia, adaptada aos costumes locais. Pequenos detalhes podem revelar essa situação, como o costume coreano de tirar os sapatos antes de entrar na residência, que já é algo instituído mesmo na vida daqueles que hoje já não se consideram coreanos, pois era algo que fazia parte da sua vivência desde os tempos de criança.

A tendência é que esse modo de vida coreano vá se diluindo com o tempo, assim como ocorreu em outras comunidades mais antigas. Mas não podemos precisar de que maneira isso ocorrerá, pois é suscetível de vários fatores imensuráveis.

O passado histórico da comunidade coreana no Brasil foi muito sofrido, marcada por muitas histórias de sofrimento e luta pela sobrevivência. Histórias essas que são recentes, e que fazem parte de um passado não muito remoto e, portanto, fresco na memória das pessoas.

Os imigrantes de 1ª geração tiveram o grande mérito de abrir novos horizontes à custa de muito sacrifício, dando oportunidade para que as novas gerações pudessem ter uma base

sólida para o seu crescimento. Se no passado os imigrantes não tinham tempo para nada além de trabalhar, hoje os filhos deles podem ter oportunidade financeira e física de estudar. Se no passado a comunicação falha com os brasileiros fazia com que houvesse uma barreira de relacionamento, hoje a comunidade se adaptou de maneira adequada.

Assim, com o reconhecimento do esforço dos primeiros imigrantes, e o melhor preparo das novas gerações, a comunidade coreana poderá avançar e desenvolver-se de maneira saudável, retribuindo o carinho que recebeu do povo brasileiro e participando na construção de um Brasil melhor, e sem se esquecer em nenhum momento de que a história de seus antepassados tem milhares de anos.

Como dizia o pensador Raffini, “a origem do indivíduo é o berço de toda a humanidade, e sem ela, o homem se torna alheio ao meio que o cerca, pois não consegue entender o presente, que é fruto do seu passado”.

POLÍTICA SOCIAL NA COMUNIDADE ESTRANGEIRA

재외동포정책

O estudo sócio-cultural das comunidades coreanas fora da Coréia é algo complexo e requer um estudo minucioso e particular, pois elas possuem características diferentes não só da sociedade dentro das linhas da Península Coreana, mas entre si, devido às diferentes condições e períodos de imigração. Hoje temos grupos de descendência coreana vivendo em diversos lugares no mundo, e no Brasil, encontramos um numeroso grupo concentrado principalmente em São Paulo.

0. A descendência coreana

O Brasil é um país único, resultado da mistura de muitas etnias, sejam de origem branca, amarela, negra ou indígena, o que faz com que seu povo tenha características particulares em todas as esferas sociais, como a alta tolerância racial, por exemplo. Isso porque a aquisição da nacionalidade é involuntária, e é determinada por origem territorial, pelo lugar em que o indivíduo nasce, o que faz com que todos que aqui se estabeleçam e têm descendentes sejam absorvidos nessa mistura.

Com os coreanos não foi diferente. Há quase 40 anos no Brasil, com a chegada dos primeiros imigrantes em fevereiro de 1963, aos poucos foram se integrando na paisagem brasileira, facilitada em parte pela grande presença de imigrantes japoneses no país desde o início do século passado. Claro que devido ao pouco tempo de imigração, ainda há algumas barreiras de ambas as partes, mas isso se vem diluindo aos poucos.

Uma questão que poderíamos citar para ilustrar a lenta integração, que por sinal pode ser observada na história da imigração de todos os outros povos, é a importância que a comunidade coreana dá à nacionalidade sanguínea, pelo menos dentro do seu círculo, em detrimento do sistema de nacionalidade territorial do país. Isso devido ao alto senso de identidade que existe nos membros da comunidade, muitos ainda da primeira geração de

imigrantes que cruzaram o Pacífico. No Brasil, é brasileiro quem nasce no país, mas para os coreanos é coreano que é filho de coreano, apesar de nascido no Brasil.

Muitos jovens nascidos após a saída da Coréia já não se consideram coreanos, pelo simples fato do seu nascimento ter se realizado no Brasil. No entanto, são inúmeros os casos de jovens que com a idade acabam por se interessar mais pelas suas raízes.

1. A comunidade coreana no Brasil

Por diversos motivos, o Direito Brasileiro é um dos que melhor abordam a questão dos estrangeiros, dando a eles vários direitos e garantindo-lhes muitos privilégios que em outros países não são encontrados.

Não existem diferenças legais marcantes nos direitos e garantias fundamentais, a não ser nos direitos políticos e militares, cabendo aos brasileiros – sejam eles natos, nascidos no Brasil ainda que de pais estrangeiros ou nascidos no exterior de pais brasileiros, ou naturalizados, adquirindo a nacionalidade brasileira em alguma das formas da lei – alguns direitos que não são permitidos aos estrangeiros, como o direito de voto, por exemplo.

A comunidade coreana no geral considera coreanos mesmo os nascidos aqui, apesar da já citada barreira que podemos observar nos mais jovens, fazendo assim com que desejem um comportamento e atitudes condizentes com tal expectativa. Assim, são considerados todos pertencentes à comunidade coreana, mesmo cônjuges brasileiros ou filhos desses relacionamentos.

Não existem casos como na Rússia, China e Japão, aonde houve imigração antes da divisão da Coréia. Existem casos isolados de coreanos que vieram juntos com imigrantes japoneses, oriundos da época da dominação japonesa na Coréia, que para cá vieram com nomes e documentos japoneses, mas que aqui chegando, demonstraram que possuíam uma identidade coreana marcante, apesar da situação.

E assim é o sentimento da comunidade coreana no Brasil, que apesar de longe e estabelecida fora da Coréia, preserva os valores dos seus ancestrais, e que desejam da Coréia um tratamento respeitoso como tais.

2. Números da comunidade

A comunidade coreana no Brasil está entre uma das 10 maiores do mundo, ficando atrás de países como os Estados Unidos, Japão, Canadá, Rússia, China, Austrália, e México.

Estima-se que apesar do êxodo ocorrido na década de 80 e 90 devido à instabilidade econômica da época, haja no Brasil em torno de 40.000 a 50.000 coreanos e descendentes, estabelecidos principalmente em São Paulo. Encontramos também coreanos em outras cidades do país, inclusive em Porto Alegre, no sul, e Natal, ao norte, e cidades populosas como Rio de Janeiro e Belo Horizonte.

3. História da comunidade coreana no Brasil

A data da primeira imigração oficial é de 12 de Fevereiro de 1963, quando 17 famílias chegaram pelo porto de Santos após semanas de viagem. O fluxo de imigração continuou forte até o fim da década, com os chamados imigrantes legais, que receberam documentação adequada para que pudessem construir suas vidas no Brasil.

Após esse período, muitos imigrantes entraram de forma ilegal no país, seja diretamente da Coréia, ou seja, por fronteiras com países vizinhos da América do Sul, e que foram beneficiados com atos de anistia por parte do governo brasileiro.

Na década de 90, podemos citar como relevante a grande entrada de coreanos vindos da China, que com o mesmo espírito dos primeiros imigrantes, vieram para tentar a construção de uma vida melhor, apesar de que fosse de maneira precária e ilegal.

No entanto, existem relatos de que os primeiros coreanos que vieram de fato ao Brasil seriam 38 exilados que chegaram em 1948, antes da divisão da Coréia, e não as 17 famílias de 1963. Além disso, alguns coreanos vieram para o Brasil de maneira independente antes de 1963.

4. Legislação para estrangeiros

Não legislação específica para estrangeiros, mas o estrangeiro é citado ou é objeto de direito desde a Constituição Federal até leis de âmbito municipal. A Lei nº 6.815, de 19 de Agosto de

1980 (alterada pela lei nº 6.964, de 09.12.1981) define a situação jurídica do estrangeiro no Brasil e cria o Conselho Nacional de Imigração (vinculado ao Ministério do Trabalho, orienta, coordena e fiscaliza as atividades de imigração, além de outras providências). Aborda também a questão dos direitos e deveres do estrangeiro.

Assim, por esta Lei, o estrangeiro residente no Brasil goza de todos os direitos reconhecidos aos brasileiros, nos termos da Constituição e das leis, sendo que o direito de trabalho ou o exercício de atividade remunerada e a matrícula em estabelecimento de ensino são permitidos ao estrangeiro com restrições estabelecidas, de acordo com o tipo de visto concedido.

Existem também algumas restrições, como por exemplo, a proibição de ser proprietário de empresa jornalística de qualquer espécie, e de empresas de televisão e de radiodifusão ou obter concessão ou autorização para a pesquisa, prospecção, exploração e aproveitamento das jazidas, minas e demais recursos minerais e dos potenciais de energia hidráulica, entre outros

O estrangeiro admitido no território nacional não pode também exercer atividade de natureza política, nem se imiscuir, direta ou indiretamente, nos negócios públicos do Brasil, sendo-lhe especialmente vedado organizar, criar ou manter sociedade ou quaisquer entidades de caráter político, ainda que tenham por fim apenas a propaganda ou a difusão, exclusivamente entre compatriotas, de idéias, programas ou normas de ação de partidos políticos do país de origem.

Um ponto relevante seria a constatação de que o imigrante coreano em especial, não possui direito político no Brasil, e tampouco na Coréia, pois perde esse direito ao se tornar residente fora do País. Para ilustrar, poderíamos citar a situação do imigrante brasileiro fora do Brasil, que mesmo em lugares distantes, tem o direito de votar e participar do processo político do País, fazendo-o nas repartições consulares, como se viu nestas últimas eleições para Presidente no mês de Outubro.

Quanto à existência de órgãos de apoio governamental ao estrangeiro, foi criado em 2000 o CONSCRE – Conselho Estadual Parlamentar das Comunidades de Raízes e Culturas Estrangeiras, criado pela Assembléia Legislativa dos Estado de São Paulo, e é um órgão pioneiro no exclusivo apoio ao estrangeiro, e cuja atuação se dá por grupos de trabalho que elaboram projetos e ações juntamente com o poder público, e cujo presidente no biênio 2001 /2002 coincidentemente é um coreano, o Sr. Choi, Tae Hoon, presidente da Câmara de Comércio e Indústria Brasil-Coréia.

Existem também Organizações Não Governamentais (ONG's), que dão apoio ao estrangeiro que está no Brasil.

A entrada e saída do país são reguladas pela Polícia Federal, e existem casos específicos de acordo com cada país. Segundo a legislação brasileira, em tempo de paz, qualquer estrangeiro poderá, satisfeitas as condições da Lei, entrar e permanecer no Brasil e dele sair, de acordo com critérios estabelecidos. Dependendo do país, poderá necessitar de visto, o que não é caso da Coréia.

Existem casos de concessão de vistos que diferem entre si, tanto nos requisitos como nos benefícios concedidos, e podem ser os seguintes:

I – em viagem cultural ou em missão de estudos;

II – em viagem de negócios;

III – na condição de artista ou desportista;

IV – na condição de estudante;

V – na condição de cientista, professor, técnico ou profissional de outra categoria, sob regime de contrato ou a serviço do Governo brasileiro;

VI – na condição de correspondente de jornal, revista, rádio, televisão ou agência noticiosa estrangeira.

VII – na condição de ministro de confissão religiosa ou membro de instituto de vida consagrada e de congregação ou ordem religiosa.

O visto de turista, concedido pelas repartições consulares no exterior, permite múltiplas entradas no País, com estadas não excedentes a 90 dias, prorrogáveis por igual período, totalizando o máximo de 180 dias por ano. Com a Coréia, foi firmado em 2001 o Acordo de Isenção de Vistos, permitindo que o coreano estrangeiro sem residência no país possa permanecer por até 3 meses, prorrogáveis por mais 3 meses

Para os estrangeiros residentes no país, existe um documento chamado RNE – Registro Nacional de Estrangeiros, de caráter provisório ou permanente, que lhes dá direito de cidadãos, inclusive o de entrar e sair do país quantas vezes for necessária, mas utilizando o seu passaporte do país de origem.

O visto permanente poderá ser concedido ao estrangeiro que pretenda se fixar definitivamente no Brasil. A imigração objetivará, primordialmente, propicia mão-de-obra especializada aos vários

setores da economia nacional, visando à Política Nacional de Desenvolvimento em todos os aspectos e, em especial, ao aumento da produtividade, à assimilação de tecnologia e à captação de recursos para setores específicos

Para obter visto permanente o estrangeiro deverá satisfazer, alguns requisitos que atendam as exigências de caráter especial previstas nas normas de seleção de imigrantes estabelecidas pelo Conselho Nacional de Imigração.

A concessão do visto permanente poderá ficar condicionada, por prazo não-superior a 5 anos, ao exercício de atividade certa e à fixação em região determinada do território nacional. O estrangeiro poderá vir ao país na condição de asilado, existindo para isso legislação própria.

Não se exige visto de saída do estrangeiro que pretender sair do território nacional. Mas os casos de entrada ou estada irregular de estrangeiro, se este não se retirar voluntariamente do território nacional no prazo fixado em Regulamento, é promovida sua deportação. Também é passível de expulsão o estrangeiro que, de qualquer forma, atentar contra a segurança nacional, a ordem política ou social, a tranquilidade ou moralidade pública e a economia popular, ou cujo procedimento o torne nocivo à conveniência e aos interesses nacionais.

É passível também, de expulsão o estrangeiro que, de acordo com a lei:

- a) praticar fraude a fim de obter a sua entrada ou permanência no Brasil;
- b) havendo entrado no território nacional com infração à lei, dele não se retirar no prazo que lhe for determinado para fazê-lo, não sendo aconselhável a deportação;
- c) entregar-se à vadiagem ou à mendicância; ou
- d) desrespeitar proibição especialmente prevista em lei para estrangeiro.

Como foi abordado anteriormente, o estrangeiro tem quase todos os direitos inerentes ao brasileiro nato ou naturalizado, inclusive o direito de possuir bens móveis ou imóveis, direito este estendido aos não residentes no país. O estrangeiro, no entanto, não possui direitos políticos.

A legislação brasileira prevê a possibilidade de naturalização a estrangeiros de qualquer nacionalidade residentes no Brasil há mais de 15 anos ininterruptos e sem condenação penal e em outros casos específicos.

As condições para a concessão da naturalização são:

- I - capacidade civil, segundo a lei brasileira;

II - ser registrado como permanente no Brasil;

III - residência contínua no território nacional, pelo prazo mínimo de quinze anos, imediatamente anteriores ao pedido de naturalização;

IV - ler e escrever a língua portuguesa, consideradas as condições do naturalizando;

V - exercício de profissão ou posse de bens suficientes à manutenção própria e da família;

VI - bom procedimento;

VII - inexistência de denúncia, pronúncia ou condenação no Brasil ou no exterior por crime; e

VIII - boa saúde

O prazo de residência fixado poderá ser reduzido se o naturalizando preencher quaisquer das seguintes condições:

I - ter filho ou cônjuge brasileiro;

II - ser filho de brasileiro;

III - haver prestado ou poder prestar serviços relevantes ao Brasil, a juízo do Ministro da Justiça;

IV - recomendar-se por sua capacidade profissional, científica ou artística; ou

V - ser proprietário, no Brasil, de bem imóvel, cujo valor seja igual, pelo menos, a mil vezes o Maior Valor de Referência; ou ser industrial que disponha de fundos de igual valor; ou possuir cota ou ações integralizadas de montante, no mínimo, idêntico, em sociedade comercial ou civil, destinada, principal e permanentemente, à exploração de atividade industrial ou agrícola.

5. Órgãos governamentais referentes a estrangeiros

Não existem órgãos ou agências governamentais que tenham como objetivo único apoiar e supervisionar assuntos referentes a estrangeiros. Tanto do lado do governo coreano, nem por parte do governo brasileiro.

No entanto, podemos citar o CONSCRE - Conselho Estadual Parlamentar das Comunidades de Raízes e Culturas Estrangeiras, criado por resolução de lei pela

Assembléia Legislativa dos Estado de São Paulo, e que representa um passo fundamental na criação de órgãos de apoio ao estrangeiro, e cuja atuação se dá por grupos de trabalho que elaboram projetos e ações juntamente com o poder público.

Quanto à comunidade coreana, ela vem ampliando a sua participação política no País, ponto fundamental para que possam existir influência na adoção de políticas específicas e órgãos governamentais que possam apoiar a comunidade em suas ações.

6. Tipos de imigrantes

Comparando-se o estrangeiro com visto permanente ou naturalizado brasileiro e o brasileiro que mora no exterior, não podemos fazer uma comparação precisa, visto que cada caso é um caso a ser analisado isoladamente.

7. A manutenção da identidade coreana

A manutenção da identidade coreana tem sido um ponto de preocupação para a comunidade coreana, além do trabalho em benefício dos membros da comunidade, visto que muitos coreanos sofrem com a dificuldade de línguas e adaptação no País. Para isso, existem trabalhos de diversas entidades, como permite a Lei brasileira, que atuam nessas áreas de trabalho. A principal entidade oficial é a Associação Brasileira dos Coreanos, que congrega todos os coreanos e descendentes, e que atualmente é dirigida já por representantes da geração 1.5, imigrantes que vieram jovens para cá, e estudaram no Brasil, como é o caso do Presidente Dr. Kwon, Myung Ho.

No Brasil, é lícito aos estrangeiros associarem-se para fins culturais, religiosos, recreativos, benficiares ou de assistência, filarem-se a clubes sociais e desportivos, e a quaisquer outras entidades com iguais fins, bem como participarem de reunião comemorativa de datas nacionais ou acontecimentos de significação patriótica.

Além da Associação Brasileira dos Coreanos, existem várias iniciativas e entidades que tentam beneficiar de alguma maneira. Entre elas, podemos citar a Associação Brasileira de Educação Coreana, entidade que mantém a Escola Coreana São Paulo, um projeto de US\$ 7 milhões custeado pelo governo coreano e pela comunidade coreana em partes iguais, e

que dedica-se a oferecer ensino de alto gabarito não só a coreanos e descendentes em um currículo binacional, mas também a brasileiros, contribuindo assim para o desenvolvimento da educação brasileira; a Câmara de Comércio e Indústria Brasil–Coreia, que cuida de interesses comerciais que envolvam membros da comunidade coreana.

A Associação Brasileira dos Universitários Coreanos, que desenvolve um excelente trabalho de integração da juventude coreana e difusão da cultura coreana na sociedade brasileira, com projetos e eventos como o Hana, que reúne anualmente aproximadamente 300 universitários coreanos em algum País da América Latina com o objetivo de aproximar e abrir espaço para a integração internacional de descendentes coreanos. Existem também entidades de cunho social como a Associação de Esportes, de Artistas, e outros que também têm o propósito de certa maneira, manter a identidade coreana.

Um dos maiores problemas enfrentados pela comunidade é perda da identidade coreana. A gradativa diminuição dos laços com as suas raízes tem sido um grande problema entre os jovens descendentes coreanos no Brasil. Conflitos familiares, choques culturais e incompatibilidade social são apenas algumas das consequências desta realidade, resultado da combinação de muitos fatores, inclusive de valores pessoais inerentes a cada indivíduo. Enquanto os primeiros imigrantes tentavam se estabelecer no novo país, buscando estabilidade financeira, muitos detalhes foram esquecidos devido ao esforço dirigido para a sobrevivência. Uma destas questões foi a manutenção da identidade coreana. Os costumes e a linguagem começaram a desaparecer, criando barreiras entre as gerações, pois os mais velhos exigiam um comportamento que sob o ponto de vista dos jovens era totalmente estranho.

Isto ocorreu devido à alienação dos descendentes em relação aos valores culturais coreanos, provocando dificuldades na comunicação, pais com dificuldades na língua portuguesa e filhos sem saber falar a sua língua materna. Analisando esta situação, podemos notar que pais e filhos estiveram vivendo no mesmo local, mas em dois diferentes mundos.

Esses choques culturais e a perda da integração foram muito traumatizantes. Alguns aspectos da cultura brasileira não são compatíveis ao comportamento exigido pelos pais. Como um exemplo claro, podemos citar o respeito exigido e hierarquia existente cujo

critério principal é a idade, e não o reconhecimento e legitimidade. Mas na cultura brasileira, essas diferenças de idade não são levadas em conta, pois o respeito não é uma questão relacionada à idade, e muito menos à informal maneira de comunicação existente por aqui.

Para piorar a situação, os valores impostos e exigidos pelos mais velhos agora causam indiferença, o que faz com que os novos pareçam imaturos e desrespeitosos. Assim, parece natural que não haja um interesse do descendente com as suas raízes. Assuntos relacionados com a Coréia naturalmente ficam em segundo plano aos interesses locais.

A mistura de valores é realmente muito confusa, o que faz com que o descendente coreano pareça indefinido em termos de características e personalidade perante a sua família e sociedade. Além disso, é notável a diferença existente entre as gerações em relação à maneira e ao meio onde cresceram. Isso sem falar na natural diferença causada pelo passar do tempo. Os pais, que provavelmente passaram pelo período pós-guerra, não sabem como controlar e educar suas crianças apropriadamente num ambiente multicultural e cosmopolita.

Em muitos casos, podemos encontrar coreanos que acabam por se isolar da sua comunidade, e ao mesmo tempo não conseguem se integrar totalmente à sociedade brasileira, situação mais comum do que se imagina. Felizmente, muitos deles percebem que são diferentes, e começam a procurar por suas raízes, o que geralmente ocorre pelo fim da adolescência, quando percebem que muitos hábitos, pontos de vista e problemas são diferentes das dos demais amigos brasileiros.

A verdade é que não havendo um pleno conhecimento das raízes, realmente é difícil o convívio na sociedade. O desconhecimento da identidade faz com que ocorram problemas de sociabilidade. Somente podemos compreender as pessoas que nos cercam quando conseguimos compreender quem somos.

Cada país tem seus aspectos positivos, que devem ser valorizados, e negativos, que devem ser evitados. Essas características positivas absorvidas da cultura brasileira e da cultura coreana são imprescindíveis para a integração e o crescimento da comunidade coreana no Brasil.

Por isso, todos os trabalhos em busca da manutenção da identidade são muito importantes, considerando-se também que a integração com a sociedade brasileira é inevitável e muito importante.

A descendência coreana no Brasil encontra-se já na 3^a geração, com os netos dos primeiros imigrantes já na adolescência. O perfil da comunidade tem-se mostrado muito dinâmico, e mudou bastante desde os anos 60. Se antigamente praticamente todos sobreviviam do comércio de vestuário e têxtil, hoje já encontramos muito médicos, engenheiros e advogados. Se antes não conseguiam manter boas relações com os brasileiros devido à língua, hoje os coreanos já são considerados parte da paisagem paulistana e brasileira e conhecidos pela sua simpatia. Também tem influência na política, mostrando maturidade social.

No entanto, para que essa situação pudesse ser mais favorável ainda, algumas medidas poderiam ser analisadas pelo Governo Coreano. Um deles seria (1) a concessão da dupla cidadania aos membros da comunidade coreana no exterior, pois em sua maioria eles vivem como coreanos e tem uma identidade maior com a Coréia do que o Brasil, apesar de serem brasileiros. Assim, a própria Coréia estaria aumentando a sua influência na política exterior, e legitimizando todo o seu povo que mora fora do País, que não tem negado o direito de participação política na Coréia. E (2) maior incentivo das atividades econômicas, sociais e políticas da comunidade coreana por parte do Governo Coreano, com maior intercâmbio em todos os aspectos, inclusive educacional, visto que os dois países possuem características positivas que podem e devem se incorporadas mutuamente, com um possível aumento de autonomia do Consulado Coreano para interferir em assuntos da comunidade coreana.

8. Direitos Políticos

Como abordado anteriormente, o estrangeiro não tem nenhum direito político, não podendo exercer nenhuma atividade de natureza política, nem trabalhar na Administração Pública.

O imigrante coreano não possui direito político no Brasil, devido à legislação vigente, e nem na Coréia, pois perde os direitos políticos ao se tornar residente fora do País. Assim, não tem direitos políticos nem no Brasil e nem na Coréia. Como comparação poderíamos citar a situação do imigrante brasileiro fora do Brasil, que mesmo em lugares distantes,

contanto que se tenha uma repartição pública que possibilite, tem o direito de votar e participar do processo político do País.

토론문

김범진씨의 “브라질 정부의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 (Pol tica sobre pequenas comunidades estrangeiras)과 브라질 정부의 외국 커뮤니티에 대한 사회정책 (Pol tica social na comunidades estrangeira)을 읽고...

최금좌 (한국외대 포르투갈어과 강사)

두 개의 글이 어떤 목적에서 따로 따로 써여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제목에서 유추하는 것처럼 재브라질 한인사회에 대한 애정 어린 글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범진씨와 같은 한국인 1.5세나 2세가 재 브라질 한인사회의 정치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한 감사와 또한 그의 의견, 즉 한국정부에 건의 사항들 - 한국 정부의 이중국적 인정문제와 한국과 브라질의 경제 및 문화 교류를 위한 재 상파울루 영사관의 한인사회에 대한 자율권 확대 문제 - 은 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면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988년 형성된 “하나(Hana)”라고 하는 한인 대학생들의 모임이 라틴 아메리카 전역으로 연계되어 300명이란 숫자가 활동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한국어린이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는 활동을 펼치는 것도 기특하게 느껴집니다. 과연 이들 젊은이들이 이러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언어와 문화는 그 맥을 이어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의 글에 대한 토론자의 본문을 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아쉬운 점들을 꼽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민에 대해 논할 때, imigrante와 emigrante에 대한 개념 차이가 분명해야 할 것이며,

둘째, 대 브라질 한국이민이라 함은 1963년 2월 12일 화란 선박 치치렝카로 산투스에 놓업이민 103명이 도착한 것을 기점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이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전 일제시대 일본이민과 함께 브라질로 들어간 한국인들도 있었고, 또한 6.25 전쟁포로로 2년 동안 인도에 머문 후, 1956년 브라질에 도착한 50명의 전쟁포로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들을 계기로 한인사회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인 사회에 대한 그의 빈약한 데이터는 재 브라질 한인사회의 젊은이를 겨냥한 재 브라질 한인사회에 대한 역사 교육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또한 70년대 불법이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이를 통해 한인사회와 한국정부가 배워야 했던 교훈이 좀 아쉽군요. 왜냐하면, 700만 불을 들여 설립한 “재 브라질 한인학교 (Colégio Polilogo)”도 한국 정부주도로 80년대 브라질리아 외곽에 건설했던 “산타 마리아 십자농장”的 경험처럼, 실패하면 안되기 때문이지요.

넷째, 또한 현재 재 브라질 한인사회의 경제 기반이 되고 있는 의류업이 년간 15억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브라질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지 않다고 쓰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바로 70/80년대에는 브라질 사회로부터 비난의 표적이 되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90년대부터는 브라질을 경유한 재미 한인교포들과 연계하여 활동무대를 넓히는 한인사회가, 이제 라틴아메리카 의류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하여, 브라질 경제력의 위상을 높이는 관계로,

브라질 정부는 한인들의 근면함을 배우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 브라질 한인들 중, 범진씨와 같은 젊은이들은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궁금하군요. 특히 요즈음처럼 브라질의 정치와 경제가 혼란(?)스러운 때 말이지요. 그리고 또한 최근 멕시코에 한인들의 숫자가 2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재 브라질 젊은이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각국의 재외동포들이 제안한 재외 동포 사회의 과제

1. 재외동포 사회의 과제

러시아 한인 사회 조직 활동의 과제와 형태

(북서 지역, 러시아 연방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상트페테르부르그의 예)

오늘날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여러 한인 사회 연맹들이 활동하고 있고 민족 문화 자치회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맹들의 효율적인 사업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이 있으니,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족 문화 자치회 간부들에서 시작하여 분산되어 거주하는 일반 한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한인 사회 연맹 대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단일 정보 채널이 갖추어져 있지 못합니다.

- 그러므로, 러시아 한인들의 생활과 활동에 관한 모든 필요한 정보,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생활에 관한 모든 최근 소식을 접할 수 있게 해 줄 러시아 한인 공식 사이트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월간 회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러시아 한인들을 위한 몇 종의 신문과 잡지가 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판물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일부 한인들에게만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니, 이는 그 발행 부수의 제한성과 배포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이 출판물들의 고정 독자들로서는 한인 사회 연맹 협의회 위원들 자신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인 사회 내에서 적극적 사회 활동을 벌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 같은 지역에 사는(예를 들어, 러시아 연방의 두 최대 도시인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그에 사는) 한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 자료를 모을 수 있는 단일 체계 혹은 지역별 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ㄱ) 개인 정보(성명, 생년월일, 가족 사항, 주소, 전화, 팩스, e-mail)

ㄴ) 학력

ㄷ) 활동 분야

ㄹ) 한국어 언어 능력 등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통계 조사를 행하여 상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 자료 응행으로 쓸 수 있습니다.

2) 민족 의식, 언어, 문화, 민족 전통 등을 부흥시키고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고정적 재정 지원의 원천이 갖추어져 있지 못합니다. 비록 상트페테르부르그 한인 민족 문화 자치회 정관에, 자치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마련된다고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 회원의 입회비와 정기 회비
- 한인 민족 문화 자치회의, 그 기관들과 조직들의 재산
- 국내외 법인들 및 개인들의 자선 기금
- 기업 활동으로부터의 수익
- 러시아 연방 수지 예산, 상트페테르부르그 수지 예산에서 나오는 자금

- 일반 법적 거래, 대회 경제 활동으로부터의 수익
- 문화 행사, 기타 행사, 경매, 복권 판매로부터의 수익
-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기타 활동으로부터의 수익
이 조항은 단5~10%만 이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을 마련하는 일이 힘든 이유는, 자치회 협의회 위원들 및 자치회의 각 대표자들의 활동이 서로간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스폰서가 될 가능성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이, 자치회 내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돈을 그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일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점에서, 자치회의 과제는 다음에 귀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스폰서가 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에게 소개하고, 또한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결과도 소개하되, 이에서 스폰서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예를 들어, 광고 효과든지, 믿을 만한 파트너 관계)도 언급해야 한다.

- 각 프로젝트 혹은 기타 활동에 대한 재정 보고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 러시아 한인들 사이에서 개인 사업의 진척을 지지하면서 기업 활동을 행하여야 한다.

3) 자치회 회원들 가운데 의무의 확실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자신의 주된 업무와 더불어 자치회 내에서 사회 활동도 할 수 있는 한인 사회 대표자들로써 주도 그룹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각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분야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회원들의 시민권, 정치적 권리, 경제적 권리, 사회적 권리, 문화적 권리를 옹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현지 국정 대표자들과, 또한 자치회 활동과 관계를 갖는 기관의 대표자들과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접촉을 위하여,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한인 사회 대표자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 해외의(특히 한국의) 한인 조직들과의 상호 작용과 관련하여 언급할 수 있는 바, 해외 조직의 대표자들과 여하한 장애 없이 정보 소통을 할 수 있고(인터넷 및 전자 우편, 전화, 팩스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된 서신 교환과 통화를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춘 인물을 1인 혹은 2인 선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책임을 맡은 이들은 한인 사회 대표자들과 해외의 동포들 사이의 '연결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든 해외 조직들과의 정보 소통을 맡으며, 적시에 접촉을 하여 정보를 능률적으로 전달할 책임을 지닙니다.

- 자치회 회원들의 적극적 활동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이들에게 장려금 혹은 월급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4) 문화 교육 활동에 결점이 존재합니다.(음력 설날과 추석 명절을 기념하는 일을 들 수 있는데, 사실 이는 자치회 정관 조항들에 부응하여 진행되어야 할 사회 활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정기 세미나를 개최하는 일을 체계화하여(자치회에 속한 건물에서, 혹은 한국어 교육이 실시되는 기관에서) 한국의 사회 활동가들, 학자들, 예술 분야 인사들을 이 세미나에 강사로 초빙하여야 합니다.

• 현재 활동하고 있는 상트페테르부르그 한인 청소년 문화 교육 센터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합니다.(한국어 교재, 컴퓨터 프로그램, 전문 서적, 예술 서적, 전통 악기 등)

- 특별 강좌를 개설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한국 음식, 풍습, 전통에 관한)

• 자치회의 장서(한국과 관련된 모든 것을 섭렵하는)를 마련하여, 누구나 관심이 있는 문헌을 찾아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모스크바 소재 대한민국 대사관 신하 문화홍보관에 도서가 존재하기는 하나, 페테르부르그 및 여타 근방 지역에 사는 한인들은 객관적으로 이해가 잘 만한 이유로 인해, 이 도서의 고정 독자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 위 세대에 속하는 많은 한인들이 중앙 아시아 공화국들로부터 러시아로, 자식들이 사는 곳으로 이주해 와 정착하여 살고 있습니다. 중앙 아시아 한인들의 어느 정도 집중된 거주 형태와는 달리, 러시아 한인들은 대도시들에 분산되어 살고 있으므로,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서로간에 친하게 알고 지낼 가능성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연로한 한인들이 자신의 모국어로써 상호간에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또 동시에 필요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위 세대에 속하는 한인들의 여가 선용 문제를 다루어야 할 과제가 자치회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연로한 부모들은, 자식들이 직장에 나가므로, 보통의 경우 하루 종일 집에 혼자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2. 한국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입장

-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언급-

먼저, 재외 동포들의 문제를 깊이 연구하며 이 분야에서 적극적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인 조직 대표자들 모두에게 러시아 한인들을 대표하여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는 재외 동포 재단에서 작성한 계획안을 접해 볼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해외 거주 한인 관련 정책 분야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 및 미래에 이루어질 활동으로서 2003년에 실행하기로 계획된 것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세부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안에는, 재외 동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분야가 총망라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연구 프로그램
- 2) 문화 활동 지원
- 3) 정보 지원(출판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 4) 교환 프로그램(해외 거주 한인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지원)
- 5) 교육 활동
- 6) 경제 활동
- 7) 정보화(세계 한인 정보망 조성)

더불어, 본인이 생각하기에 토의가 좀 더 필요한 몇몇 문제들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 1) 전체적으로 활동 분야가 대규모로 총망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사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중국, 러시아, 독립 국가 연합, 미국 혹 유럽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들의 생활 양식의 특성들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그 어떤 수정을 기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을 이중으로 설정하는 정책' 혹은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 경우마다 해당 지역에

당면해 있는 문제들을 고려하자고 제의하는 것입니다.(계획안에 사용된 '특수 지역'이라는 용어의 정리.)

2) 재외 동포들을 위한 전 세계 정보망에 필요한 향후 자료들은 어떻게 마련될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향후 확대될 자료 모음은 어떠한 견지를 내용으로 할 것이며, 정보의 선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까?

3) 그 어떤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나마 자체는 어떻습니까? 다시 말하면,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그 어떤 일정한 도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각각의 경우마다 다른 도식이 적용될 것입니까?

4) 재단 직원들과 지역 한인 사회의 실제 대표자들 간의 상호 관계는 어떤 식으로 실현되고 있습니까? (집회 및 국제 회의 외에.)

5) 현재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고려는 되고 있습니까? 혹 그들과 관련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6)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은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7) 해외 거주 재외 동포들에 관한 법률 심의에 있어 재단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까?

8) 재단은 같은 문제를 다루는 한국의 다른 국가 조직들이나 NGO 조직들과 협력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한국국제교류재단, 학술진흥재단, 기타 사영(私營) 사회 조직들의 활동.)

물론, 계획안 하나로써 모든 정보를 다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들이 이미 전에 토의되었던 것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 소개되어 있는 과제가 그리 거창한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실행되어, 재외 동포들의 희망을 실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

재외동포 정책개정에 대한 견해

중국 연변대 양옥금

현재 한국에서는 '재외동포법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정부부처, 법개정대책협의회 등 부처에서 일련의 쟁점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원만한 결과를 위하여 많은 학자들과 민간단체에서 많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는 이러한 쟁점을 잠시 떠나 중국조선족이 지금 처한 기본상황과 '재외동포법'과 관계되는 점과 저의 기본 입장을 나름대로 피력한다.

중한수교 이후 중국조선족들은 많은 면에서 실리를 가져왔다(편복의 제한으로 이 문제는 줄인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회문제도 초래되었다. 여기에 중국조선족들의 한국나들이로부터 초래된 아주 보편적인 실례를 몇 가지만 들겠다.

첫째, 중국조선족들의 한국나들이의 시점, 그리고 그 문제점

중국이 개혁개방 시장경제로 개입한 후 중국사회는 큰 발전을 가져와 나라의 綜合國力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놀라운 정도로 제고되었다. 따라서 매 가정에 수요되는 생활비용도 많아졌는데 특히는 자녀들의 교육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하여 농촌농민들이 전통적인 농사수입으로 이러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하여 적지 않는 중국조선족들은 삶의 새로운 출로를 출국 즉 문화, 언어, 감정이 통하는, 고맙게도 아세아의 龍으로 부상하여 세계 선진적인 발전수준에 오른 모국으로의 진출에 모를 두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출국경로를 보면 친척방문, 노무송출, 국제혼인 등의 합법적인 거래와 불법적인 거래 즉 밀항, 려권위조, 위장결혼, 가짜친척방문, 개별적인 기관 등 違法과 범죄수단도 가리지 않는 바 이 과정에서 모국국민과 중국조선족들 간의 不信과 불만, 실망이 크고 마음의 상처 또한 크다.

둘째, 가정의 불안정과 해체

현재 중국조선족들의 한국진출은 아주 힘든 바 한국으로의 진출은 한국돈 1200~1300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야 하는데 이는 중국의 일반 가정을 놓고 말하면 천문수자라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들이 일단 한국에 빨을 들여 놓으면 적어도 2년이란 시간이 걸려야 빚을 갚을 수 있다. 그 후 약 3년간 일해 최대로 아껴서도 중국돈으로 15만 정도 모으기 힘든데 이는 연길에서 80m²정도의 집을 살 수 있는 돈이다. 하지만 자녀들의 교육비, 향후 삶의 개척을 위한 경제기반을 갖추자면 적어도 7~8년간 있게 된다. 그러면 7~8년 동안 어린 자녀들은 부모의 얼굴 모습도 기억할 수 없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른 한쪽은 고독을 달랠 수 없어 또 출국하던지 아니면 혼여지든지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 중국조선족의 이혼율은 전국에서도 제일 높다. 2000년에 결혼과 이혼의 비율이 50%가량 된다.

셋째, 부모들의 출국으로 인한 자녀들의 교육문제

현재 중국조선족들의 출국으로 인한 제일 큰 문제는 자녀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2000년 하반년에 연변대학통신학부의 통신학원들을 통해 중국 동북3성의 9개소의 중소학교(한국의 중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부모 출국상황을 조사하였다. (도표 참조)

<도표> 부모들의 출국상황

순서 번호	조사 학교(지방)	반수 (기)	조사학생 총수(명)	부 모 출 국 정 황				
				아버지(명)	어머니(명)	부모모두	출국부모	출국부모기악
1	료녕성심양시소가툰구	4	199	70	69		139	69.85%
2	료녕성영구시 조선족소학교	5	154	37	16	21	74	48.05%
3	길림성화전현 조선족중학교	5	168	36	19	3	58	34.52%
4	심양시동령구흔구참조선족항만용소	7	271				173	63.8%
5	료녕성심양시우홍구	6	189	27	35	50	112	59.26%
6	길림성류하현조선족제1중학교		246	27	60	45	132	53.66%
7	길림성도문시 제2소학교	3,4학년	367	55	62	117	234	63.76%
8	료녕성안산시철서조선족소학교		185	20	30	21	71	38.4%
9	료녕성료양시 조광촌과 광휘촌		248	57	46	50	153	61.69%

도표에서 보면 부모의 출국비례가 조사학생 총수의 35~70%이다. 출국한 분들의 자녀들이 아버지가 출국했을 경우 어머니와 같이 살고 어머니가 출국했을 경우 소수가 아버지와 같이 살고 대부분이 가까운 친척에 의해 살고 있다. 이 아이들 중 인간성좋고 공부도 잘하는 애들이 물론 있다. 하지만 변태적인 애들이 많고 인간성, 공부, 대인관계 등면에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외국에 있는 부모들은 주로 경제적으로 자식에 대해 보답하는데 이는 또 하나의 악 순환으로서 이런 애들의 소비관념과 돈에 대한 개념이 그릇되고 있다. 출국부모들의 돈벌이가 만약 자녀들 진로의 불진 혹은 불행한 길로 들어선다면 부모들 출국의 보람이 무엇일까? 조사자들이 출국자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으니 대부분 애들이 〈엄마, 아빠 빨리 오세요〉, 〈부모중 한분이라도 저의 곁에 남아 주세요〉라고 울면서 처절하게 대답하더란다.

이상의 아주 보편적이고 기본생활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정책개정' 문제에 관한 저의 견해는 '재외동포정책'의 시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서의 저의 입장은:

첫째, 부동한 나라, 부동한 실정, 부동한 기대에 따라 부동한 정책을 制定하기를 바란다.

현재 142개국에 걸쳐 600만이나 달하는 각 나라 해외동포들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하여 제반영역에서의 차이점이 아주 크고 고국에 대한 기대도 다른점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이 시점에서 동일한 '재외동포정책'이란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때문에 '재외동포정책개정'에 各國(혹은 주요국가) 동포들의 진정한 수요는 무엇인가하는데 그 시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조선족은 우리 한민족, 한 피줄인 동시에 중국의 국민이다. 역사적인 요인으로 하여 한반도로부터 100여년전부터 중국으로 천이한 遷移民族이다. 지금의 중국조선족은 대부분이 2세, 3세이다. 이들은 중국에서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의 올바른 민족정책으로하여 한족들과 차별 없을 뿐만아니라 많은 면에서 한족보다 우월한 권리, 즉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생활등 제반영역의 권리와 이익을 부여받고 중국의 한 개 당당한 소수민족으로 되여 민족문화, 민족특성, 민족풍속, 나아가서 민족의 존엄을 훌륭히 지켰고 살렸으며 중국특색의 민족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조선족으로 부상하였다. 중국의 조선족들은 중국정부에 심후한 감정과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조선족들의 고국인 한반도는 제도적, 문화적, 가치관 등면에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질성 또한 아주 크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정책과 법적인 제한으로하여 중국조선족이 겪고 있는 갈등 또한 아주 크다. 때문에 '재외동포정책'의 개정에 '혈통주의', '평등주의'를 떠나서 중국의 소수민족정책과 화교정책을 참고로 각국의 부동한 실정에 따라 부동한 정책을 제정, 실시함이 바람직하지 않을가 싶다.

지금 중국조선족들의 한국입국은 하늘에 별따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국 비자수속이 지금 점점 더 어렵고, 까다롭다. 그리고 입국시 세관에서, 입국후에도 罪人취급받을 때가 아주 많아 "이곳이 고국이 맞나?"라는 갈등과 슬픔을 가지게 된다. 기본적인 인간취급도 받지 못하는 시점에서 "혈통주의", "이중국적"에 대한 설은 참 웃기는 얘기다.

총체적으로 "혈통주의", "이중국적"설을 중국정부가 분명 허용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에서 살고있는 조선족들도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조선족 중 소부분의 "영주권"을 요구하는 자들, 즉 부동한 요구에 따라 부동한 정책을 제정하였으면 한다.

둘째, 중국조선족에 대하여서는 출입국제도에서의 우대정책을 실시하여 중국정부의 화교정책과 소수민족정책처럼 본국국민보다 우대정책을 못할지라도 조선족에 대한 불법체류, 罪人式의 대우 문제를 해결함에 초점을 두고 이들이 어느정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자유롭게 노동권리, 한국국민과 동등한 노동보수권만 허용한다면, 가족있고 자식있는 부모들이 자유로이 나들수만있다면, 고국땅에 와서 6, 7년씩 있을 사람이 없을 것이고 고국의 법을 더욱 잘 지킬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 떨어져 사는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도 상대적으로 잘 풀질 것이고 가족의 안정과 중국조선족의 많은 사회문제도 따라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재외 동포 정책에 관한 논평

송승재(제일한국청년연합 공동대표)

제일코리안사회의 과제에 관해서는 발제문으로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논평만을 전개하고 싶다.

재외동포법의 개정에 관해서~ 「조선표시」 보유자는 반드시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행의 재외동포법 제2조2항의 외국국적동포 규정에 의하면 재중동포, 재CIS 동포, 재일동포중 「조선표시」 보유자가 제외된 상태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국회에서 검토될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두 안 모두 「조선표시」(내지 「조선적」)자를 배제하는 안이 되어 있다. 저는 제일 코리안의 입장에서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재일코리안의 「조선표시」 보유자는 반드시 재외동포법의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된다.

먼저 말했던 것처럼 제일코리안 사회속에 「조선표시」 보유자는 1947년 당시 일본 국내에 존재한 모든 재일 코리안에게 부여받은 「조선」 이라고하는 일본 외국인등록법상의 「기호」를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자손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조선표시」 보유자는 무국적자 「무국적」이다.

제일코리안의 「조선표시」 보유자를 배제하는 이유로서 한국정부가 「안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상되지만 위와 같은 제일코리안 「조선표시」 보유자의 현재의 상태를 생각할 때 그러한 생각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한다.

제일코리안 「조선표시」 보유자의 대부분의 사람의 고향이 남쪽에 있는 것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제일코리안 「조선표시」 보유자가 재외 동포법의 대상자가 되는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다양한 재일코리안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현재까지 한국정부의 제일코리안사회에의 지원은 재일본대한민국민단(한국민단)에 대한 지원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활동을 전개하는 재일코리안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재일코리안 자녀의 대부분(약90%)이 일본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 재일코리안 아이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육성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민족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일본학교에서는 아주 적은 월급밖에 받을 수 없다. 그들에 대한 지원문제는 한국민단을 지원한 것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밖에도 재일코리안의 다양한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가 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단체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3) 재일코리안사회에서 재외동포재단이 더 가까운 존재가 되기 위한 제안

그 때문에 나는 재외동포정책을 짚어진 재외동포재단이 일본을 방문하고, 제일 한국인 사회 한 가운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와 간담회를 갖을 것을 제안하고 싶다. 제일 한국인의 무명으로 활동한 단체가, 제일 한국인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소리를 들어 보는 것이

무엇보다 가치있는 재외동포정책을 전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재외코리안 문제에 대해 한 층 높은 여론화가 필요하다

재외동포사회는 그 거주국과 한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다하는 존재이며 글로벌 시대의 한국의 미래상을 생각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존재이다. 그렇지만 한국 시민사회의 재외동포사회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는 것이 현재의 상태이다.

재외동포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해서, 그리고 재외동포사회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한국시민사회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다.

또 재일코리안사회에 관해서 말한다면 재외동포법 대상에 재일코리안의 「조선표시」 보유자를 포함한다는 문제가 단지 「포함한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던 재일코리안의 「조선표시」 보유자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한국시민사회 속에서 만들어 내나가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표시」 보유자와 한국 방문 한국인과의 교류의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난9월에 있었던 조선학교 학생에 의한 한국 문화 공연 등은 이를 위한 상당히 중요한 것이었다. 앞으로 한국 시민사회속에서 이와 같은 기회가 준비되도록, 재일코리안 단체와 한국 시민사회 단체가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입장과 정부에 대한 건의

신효진, 최영숙 (독일)

한국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독일 거주 한국인의 입장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다.

크게 1세대가 혈통주의 원칙을 선호하는 것에 비해 2세들 대부분은 속지주의/ 출생지주의를 지지한다.

1. 재외동포법에 대하여

한국의 재외동포법에 의하면 재외동포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로 나누어진다. 이 정의에 의해 재외동포에 속하는 사람은 재외동포법이 정하는 권리와 보호를 받는다.

그런데 재외동포법 개정을 둘러싼 토론이- 읽은 자료에 의하면- 마치 재외동포 개념 규정에 있어서 혈통주의원칙과 출생지주의원칙 사이의 대립으로 인해 비생산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먼저 혈통주의란 어떤 나라에서 현재 출생한 어린이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원칙을 소위 혈통에 두는 것으로, 출생지 또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소위 부모의 핏줄에 의해 국적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출생지주의는 부모의 혈통과 상관없이 어린이가 태어난 지역, 즉 출생지에 근거하여 국적을 부여한다. 각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지는 해당 나라의 문화적 역사적 조건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이와 달리 이미 성인이 된 개인의 귀화 조건과 원칙에도 혈통주의 혹은 출생지주의 또는 두 원칙 상호보완 등의 방식이 있다.

1/1 재외동포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에서 혈통주의에 근거한 입장은, 본인 또는 그 직계 가족이 언제부터 어디에 살고 있는지 상관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는 누구나 외국국적 동포 (재외동포법 제2조2항 외국국적 동포 조항과 관련하여)로 정의하자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근거는, 만일 혈통주의에 근거하지 않고, 출생지주의로 재외동포법을 개정할 경우, 마치 현재 외국에 살고 있는 외국 국적을 가진 1세 또는 직계자손이 “외국국적 동포”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독일 1세의 입장). 나아가 그럴 경우 이들이 더 이상 한국 민족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는 듯 하다. 예를 들어 미국 거주 동포들의 개정안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중에서 부모의 쌍방 또는 일방이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외국국적 동포로 정의하자고 제안하는데,

이는 한편에서 한민족의 혈통이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 4, 5대째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인 경우에 부모의 핏줄만 증명하면 외국국적 동포, 소위 한국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의는 부모가 한국국적을 가졌다가 현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한국 사람이 아니면 (한민족 피를 증명하지 못하면) 외국국적 동포에서 제외되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 우리는, 1세대 이상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서 해당 국가가 보장하는 법률적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대를 이어 외국국적 동포로서의 규정을 통해 이중으로 법적인 권리 의무를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독일 국적 동포가 독일에서 선거권과 병역 의무 등을 가지면서 다시 동일한 의무와 그에 상응하는 권리를 핏줄을 근거로 한국에서 받을 필요가 없듯이). 이민 일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스스로 원하는 문화적 정체성 또는 그것을 위한 지원활동은 국적이나 재외동포 정의가 아니라 한국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각 차원의 다양한 조직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수많은 연방 혹은 각 지방 정부 차원의 기관들이 외국에서의 문화지원정책으로 독일국적 혹은 외국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 정책에 해당하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즉 외국에서의 한국문화활동에 대한 지원은 국적 혹은 핏줄과 상관없이 한국정부의 문화활동 지원에 의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 외국에 거주하면서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갖지 못한 동포의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인권 보장의 차원에서 혈통주의 혹은 출생지주의 원칙과 상관없이 용이한 국적 취득을 보장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일본 소련 거주 무국적 동포도 마찬가지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한국 국적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한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혈통주의를 보장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독일의 경우 1999년 이후에 최소한 한쪽 독일 부모를 가지고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더 이상 독일 국적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국적부재의 경우 그 신분을 보장한다.)
- 다른 한편 외국국적 동포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외국인의 신분으로 받게 될 한국 내에서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혈통주의 원칙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대를 이어 외국국적 동포가 되는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의 일반적 외국인 정책을 진보적인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즉 한국 내에서 외국인 일반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여 그 신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없앰으로써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본다. (외국인 출입국, 선거 피선거권, 사회보장, 노동권리, 가족 결합 등등).

1/2독일 거주 한국인 2세 대부분은 이제까지 독일에서의 경험에 근거해 국적이 혈통주의뿐만 아니라 속지주의/ 출생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엄청난 이주현상들에서 볼 때 순수한 혈통, 핏줄에 근거한 국적 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제한한다. 한 나라에 있는 문화적 소수 그룹이 그 나라에서 함께 살면서 그 사회구조와 문화를 공동으로 만들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핏줄을 근거로 법적인 보장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된다는 점이, 바로 혈통주의가 갖는 반 인권적 성격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재외 한국인 2세 대부분은 혈통주의에 근거한 이제까지의 법률적 규정이 앞으로도 여전히 고수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독일에서는 혈통주의에 의해 한국국적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원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거나 어려움이 많았다. 즉 혈통주의에 근거해 지원을 받기보다는 개개인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박해나 고통을 더 많이 받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혈통주의에 근거한 법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생각해 봐야된다고 본다.

- 구체적으로 속지주의/ 출생지주의 원칙에 따른 입장을 표명한 국가 인권위원회와 정부 부처의 주장을 보면, 1) 국가 인권위원회가 혈통주의 규정이 국제법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미 앞에서 밝힌 바처럼, 일본 또는 타국에 거주하는 무국적 한국인에 대해서는 인권적 차원에서 예외 규정을 통해 국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신분적 독일인”에 대한 규정 나아가 국가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속지주의/ 출생지주의 원칙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한국 내 외국인의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외국인법 개정에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 정부부처와 국회가 소위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300만 재외동포들에게, 특히 예를 들면 중국 거주 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첫째 인권보호 정신에 위배되고, 두 번째로는 정부부처가 외교적 활동을 통해 해결해야 되는 자신들의 책임을 임의적인 법개정을 통해 전기하려고 하는 태도다. 이미 밝힌 바처럼 우리는 속지주의/출생지주의 입장에서 재외동포법을 개정하되, 헌법 재판소가 위헌 판정에서 밝힌 바처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지의 한국인에게 국적 획득 기회를 주는 법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료5페이지5번 조항을 보면 “외국인이 아닌 재미동포 등 각국의 외국국적동포를 대상으로 법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혈통주의의 입법이 국제법 원칙에 반한다는 (정부부처의) 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라고 되어있는데,

우리는, 첫째, 법 시행 중이라 해도 일반적 원칙으로 혈통주의의 입법이 국제법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앞으로의 법 개정방향과 관련된 입장이라고 보면, 정부 부처 입장의 문제점은 혈통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외교마찰을 근거로 재외 동포 국적 획득 기회를 제한하려고 하는 데 있다.

다음으로 법무부와 노동부가 혈통주의에 반대하면서 속지주의를 주장하는 근거로, 재중동포가 혈통에 근거해 한국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노동시장이 교란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데, 첫째,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도 재중 동포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예외규정을 통해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둘째, 법무부와 노동부가 진정으로 국제법 즉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속지주의를 주장한다면, 혈통에 상관없이, 즉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한국에서 살고 일하는 모든 노동자는 동일하게 인권보호와 경제활동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된다. 만일 이런 조건이 마련된다면, 중국 거주 동포들이 굳이 한국 국적 없이도 한국 시장 내 외국인 노동자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법무부와 노동부의 속지주의 주장은, 속지주의 원칙의 기본 정신은 없고, 단지 이 원칙을 중국 동포들의 한국 내 경제활동을 제한할 목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자체 모순이다.

- 안보 문제 운운하는 정부부처의 말은 근거가 없다. 안보문제는 외국국적 동포 정의와 상관없이 안보 정책과 그 활동을 통해 해결할 문제다.

2. 재독 한국인의 문제점과 한국 정부에 대한 견의

사실 독일에 살고 있는 한국인2세로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 영사관 등이 재독 한국인을 위해서 여권 발급 이외에 무슨 일을 하는 지 알 수 없다. 아니 하는 일이 있는지 묻고 싶다. 가장 큰 문제는 독일 내에서의 한국 언어와 문화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직적인 지원이 없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1) 베를린 흄볼트 대학과 베를린 자유대학에 한국학과가 있었는데, 1998년 경제위기가 있기 전에 당시 주식회사 기아가, 독일 교육청의 지원 없이도 단독으로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과를 새로운 재단 설립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제안해서, 당시 전체 대학 개혁과정에 있던 베를린 교육청이 이 안을 받아들여 흄볼트 대학 한국학과를 폐지하였으나, 아이엠에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기아의 지원이 사라지고, 결국 흄볼트 대학 한국학과가 폐지된 것뿐만 아니라 베를린 자유대학 한국학과도 재정문제로 점점 과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 독일에서 한국학을 배우기 위해 베를린으로 왔던 한국인 혹은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할 기회를 잃게 될 지경이다.

독일 내 한국학과를 개설하고 한국학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중요한 문화정책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베를린 자유대학 내 한국학과 및 흄볼트 대학 내 한국학 강좌에 대한 조속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바란다.

2) 다음으로는 수년 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한국인 학교를 건립하고자 시도했으나 주되게 재정문제로 좌초된 적이 있다. 대학 내 한국학에 대한 지원과 동일한 취지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외국 주재 독일인 학교 및 그에 준하는 교육 기관 설립을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한국 정부도 주요한 문화정책의 내용으로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매해 상당한 상사 직원들과 가족 그리고 유학생들이 독일에 오지만,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상사 직원, 예를 들면 삼성이나 기타 대기업 직원 및 가족이 처음 독일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절차 업무에 대해서는 대사관과 영사관이 지원을 하나, 유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없다. 원래 재외 정부 조직의 역할이 자국 동포를 대리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된 과제로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활동이 없다는 점은 놀랍다. 만일 영사관과 대사관이 위의 과제를 소수 상사직원에만 국한시켜하고 있다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유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독일 내에서의 한국문화 활동은 그간 자생적으로 조직된 수많은 사조직 단체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민 역사 30년 동안 개인의 사재를 바탕으로 구려온 이 단체 조직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고, 나아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런 문화 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거의 부재하다. 오히려 대부분의 지원을 독일 문화단체, 조직 재단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5) 독일 내 한국 문화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지원 조직으로 베를린에 한국 대사관 산하 문화원이 있으나, 첫째 지원 단체 혹은 개인 선발 과정이 불투명하다. 재정지원을 전제한 단체 개인 선발을 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선발 위원회 혹은 심사 위원회가 구성되는지, 어떤 기준에서 선발하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다분히 문화원장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경우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문화활동의 질도 보장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지원 내용의 대부분이 보수적인 전통 문화활동에 편중된다는 점, 그리고 많은 행사에 한국에서 연예인 또는 유명인사를 불러오는 데 재정을 낭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독일 주재 대사관 산하 문화원이 투명한 조직과 원칙을 통해 지원활동을 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문화원장 개인 또는 그 가족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현대 문화적 흐름에 대한 깊이 있는 안목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통문화 뿐만 아니라, 현대 예술 그리고 전통의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활동들에 대해서도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6) 독일에 살고 있는 다양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과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지원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지원활동은 단순히 외국 내 동포에 대한 단편적 재정 지원을 넘어 한국 내 문화 활동의 내용을 확보하고 다양성을 획득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경험이 말하는 바는, 대부분의 한국 정부 조직 혹은 유사 단체들이 편협한 선입관, 이념적 편견으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앞으로 외국에서의 지원활동이 단순한 한국동포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풍부한 연대활동이라는 입장에서 행해지기를 바란다.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제안

김대영

미국정부는 해외 미국인을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미국시민권자는 해외에서 미국인으로써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영사관에 등록할 것을 권유받는다. 해외이민에 대한 빈약한 조사가 보여주듯이 미국은 자신은 이민송출국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나 언어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미국은 한국에 있는 재외한국인과 같은 유형의 해외미국인 사무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해외미국인이나 그들의 자손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미국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출생한 자신의 아이들을 등록하는 한 그 아이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을 얻는다. 각 나라의 역사적 특수성 때문에 정치적 제안은 각 나라의 필요에 따라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민정책에서도 한국 정책을 만드는데 쓸 수 있는 유용한 교훈을 조금은 주워 모을 수 있다. 다음은 역사와 전후사정의 차이를 고려하며 미국이민정책에서 정책들을 추천해 보려는 시도이다.

재외한국인(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재외 한국민족)

독일인은 동유럽에 있는 독일민족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특별한 참작을 한다. 많은 아르헨티나인들도 근래 들어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혼란 때문에 그들의 혈통을 이용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특별한 참작을 신청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정부는 이들 나라에 많은 아르헨티나인들이 입국함에 따라 그들의 폭넓은 시민권 개념을 고쳤다. 중국과의 정치적 마찰을 고려한다면 중국에 있는 조선족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좀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의 비자신청에 불필요한 장벽을 세워 두는 것은 이들의 역사적 수급권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민족의 자유로운 한국 출입국을 허하는 특별한 비자군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력 필요성과 중국 조선족의 경제적 목적을 고려해 보면 취업권이나 영주권 대책이 좋은 타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책들은 취업권 보유자나 영주권자에게 (그들의 자녀를 위한) 동등한 교육의 기회와 의료보험혜택, 사회복지, 노동권 보호를 주어야 한다. 영주 목적은 장래에 시민권 획득의 목적으로 보여져야 할 것이며, 한국 거주 몇 년 후 자신들의 법적 지위를 바꾸려는 영주권자들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이중시민권에 관한 문제가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5년동안 거주한 자에게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적 이민자들을 위한 대책이 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별다른 법적 권리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까지 많은 이민자들이 시민권에 달려들지 않았다. 시민권 획득은 단지 약간의 혜택, 주로 투표권, 공무원 채용, 더 빠른 가족 재결합을 가져온다.

영주권자가 모든 법적 권리 가지고 있는 한 (교육 기회, 개업을 할 권리, 부동산 소유권, 의료보험, 사회복지혜택, 노동권 보호), 시민권은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시민권이 권리로 부여하는 단 한 개의 판단기준이라면, 정책보다는 차별이 더 존재한다.

한번 영주권과 다른 유형군들에 대한 문이 열린 이상, 정책 입안자들은 또한 자신들의 정책의 합의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은 그 배우자에게 특별한 거주 유형군을 제공하여 가족이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영주권) 이것은 또한 이들의 자녀에게 영주권이나 자동적 시민권을 받도록 적용된다.(판단기준이 혈통주의인지 속지주의인지에 따라) 미국의 경우,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 다른 나라보다 더 자유로운 국가를 만들고 있다. 한민족이 아닌 사람과 한국인의 결혼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기 위해 혈통에 관계없이 이것을 포함시켜 평등해 져야 한다. 물론 사기결혼과 이혼은 이 자유로운 정책의 부작용이다. 그러나 가족의 결합이 판단기준을 정하는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민족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면서,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와 망명자들을 위한 이민정책도 배치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파렴치한 고용주의 착취를 막기 위해 완전한 노동력 보호와 의료보험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추방의 위협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하기 위해 쓰여지므로 한국정부는 착취를 막기 위해 이민정책을 개정하여야 한다. 미국은 몇몇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에 불법 노동자를 시연해 왔다. 멕시코로부터의 국경횡단은 계속 진행될 것이고, 미국은 이 인구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이민정책은 자유로워지지 않고도 영주거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임시 취업허가를 줄 수 있다. 미국은 기업들에게 각 회사의 필요에 따라 노동국에 보증을 하고 이 대책을 사용하고 영주권 신청을 인가했다. 이 법은 전문직 노동자(컴퓨터 프로그래머, 기술자, 의사, 간호사 등)와 단순노동자(가정부, 의류업 노동자, 식용 가금류 공장 등) 모두에게 적용된다. 한국정부가 이러한 통로를 통한 이민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미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 착취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유형군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노동력 필요를 이민으로 해결하여 왔다. 전지구적 불균형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이주노동은 계속될 것 같다. 전통적으로 한국같은 이민송출국은 이민유입문제와 맞닥드린적이 없다. 그러나 현재 또 앞으로 한국은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를 직면해야 할 것이다. 제한적인 정책은 한국의 평판을 위험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시민과 비시민의 사회권 권리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동등하게 무시하는 것이다.

Policy Recommendations

The US government does not provide special programs for overseas Americans. As US citizens they are encouraged to register with the consular offices abroad to ensure that Americans are fully protected. Given the lack of emigration data (which has not been collected) and the fact US does not consider herself as an emigration country, no efforts have been made to create cultural or language programs. Thus, the US does not have an overseas Americans office that parallels the Overseas Koreans division in Korea.

Consequently, there are no specific policies towards overseas Americans and their descendants. As long as US citizens register their children born abroad, the children are granted automatic citizenship. Given the historical particularities of each country, policy recommendations have to be tailored to the needs of each country. However, there are some lessons we can glean from American immigration policy that may be useful in designing policy in Korea. What follows will be an attempt to recommend policies from US immigration policy taking into account the historical and contextual differences.

Overseas Koreans (particularly ethnic Koreans in China, Japan, and Russia)

Germany has given special considerations toward ethnic Germans in Eastern Europe granting citizenship. Many Argentinians are also using their ancestry to apply for special consideration in Spain and Italy due to the recent financial crisis in Argentina. Spanish and Italian governments have reacted to their broad citizenship definitions as many Argentinians are entering these countries. Taking into account the political conflicts with China, automatic citizenship for ethnic Koreans in China need to be further explored.

However, putting extra barriers for visa applications for ethnic Koreans from China fails to consider the historical entitlement of these overseas Koreans. The Korean government may proceed with a special visa category that allows ethnic Koreans unconstrained access to Korea. Considering the labor needs of Korea and the economic intent of ethnic Koreans from China, the provision of a work permit or permanent residency may be a good compromise. These provisions will have to confer to work permit holders or permanent residents equal access to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health care, welfare, and labor protection. The intent for residence should be seen as intent to acquire citizenship in the future and there has to be a provision for permanent residents to change their status after a number of years of residence in Korea (question of dual citizenship should also be addressed). The US does have this provision for legal immigrants, who after completing 5

years of residence have the opportunity to acquire citizenship. Many immigrants have not jumped to citizenship until recently becaus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egal rights between a citizen and a permanent resident. The acquisition of citizenship gave only minor benefits, mainly the right to vote, hold public office, and faster turnaround for family reunification.

As long as permanent residents have all the legal rights (access to education, right to open business, buy property, health care, welfare, labor protection), citizenship does not become a major priority. However, if citizenship becomes the sole criteria for granting rights then there is less room for policy and more room for discrimination.

Once the door is open for permanent residency or other categories, policymakers have to also consider the implications of their policy. For example, marriage to a citizen or a permanent resident should offer the spouse a special residency category (permanent residency in the case of the US) so that families are not separated. This also applies to children of these unions, whether children receive permanent residency or automatic citizenship (depending on the jus solis or jus sanguinis criteria). In the US case, the jus solis criterion holds, which makes it more liberal than other nations. This should be uniform regardless of ancestry, making it inclusive to include non ethnic Koreans who form unions with Korean citizens and children born from these marriages. Obviously marriage fraud and divorce are sideeffects of a liberal policy, but family unification should be the primary determining criteria.

Finally, while special considerations should be given to ethnic Koreans, immigration policy should also lay out policies for foreign workers and asylum seekers. Most importantly, foreign workers should be given full labor protection and access to healthcare to thwart exploitation from unscrupulous employers. The threat of deportation serves to abuse foreign workers and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revise immigration policy to stop the exploitation. The US has provided amnesty on several occasions to meet its labor needs with undocumented workers. Border crossing from Mexico will likely to continue and the US will have to deal with this population. Korea's immigration policy, not likely to be as liberal, can still allow for temporary work permits that have the possibility of becoming permanent residents. The US uses such provision for companies to certify to the labor department of its labor needs and a petition for permanent residency is approved. This rule applies to both highly-skilled workers (computer programmers, engineers, doctors, nurses,

etc.) as well as low-skilled jobs (domestics, garment workers, poultry factories, etc.). While the Korean government may not want to encourage immigration through these channels, the foreign workers already in Korea should be granted a special category in order to protect them from labor exploitation.

The US has and continues to rely on immigration for its labor needs. Due to the global inequality, labor migration is likely to continue in the foreseeable future. Traditionally emigration countries such as Korea did not have to confront immigration issues. However, today and in the future, Korea will have to face increasing numbers of foreign workers and a restrictive policy will not only jeopardize her reputation abroad (including difficulties for Korean multinationals doing business) but also disregard the democratic ideals of social rights for citizens and noncitizens alike.

KIS추진위원회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

이선옥(KIS 추진위)

1. 국적 부여방식 (<http://www.kangbuk.seoul.kr>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출생, 인지, 귀화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출생에 의한 국적을 취득하는 게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생에 의한 국적의 취득에 관하여 각 나라가 취하고 있는 원칙은 크게 혈통주의와 출생지주의(속지주의)로 나눌 수 있다. 혈통주의란 부모의 국적에 따라서 출생자의 국적을 인정하는 원칙으로서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중국 등 아시아권 나라와 독일, 불란서 등 유럽지역의 나라가 주로 채택하고 있고, 출생지주의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출생한 사람에게 모두 자국의 국적(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으로서 미국,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중남미 지역의 나라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태국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국적법에 따른 국적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출생한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출생하기 전 부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사망당시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부모가 모두 국적이 없지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부여받는다.

②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상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미성년자(외국인)로서 부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일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③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성년이며 대한민국에 5년이상 계속 체류하여 일정한 자산을 갖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에게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지만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으나 이후 외국적을 취득한 사람,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은 국적법 제6조에 의해 간이귀화 절차를 밟으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는 귀화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수반취득

외국인으로서 미성년인 자는 부 또는 모가 귀화를 허가 받을 때 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⑤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의 국적법에 따르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후천적 이중국적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국적법 제15조1항). 즉, 한국국적 취득자는 외국국적 포기의 의무가 있고, 이중 국적자는 국적선택의 의무가 있다. 이러한 것들은 후천적 이중국적보유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선천적

이중국적 보유는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생 당시 부 또는 모 중에 한 사람이 한국 국적 보유자이면 그 자녀는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가질 수 있지만, 만21세가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단, 남자의 경우는 병역 문제가 있으므로 만18세 이전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한국에서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싫다면, 만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만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2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이중국적인 사람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된다.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① 미국, 캐나다와 같이 출생지주의 나라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국국민인 사람(한국 국적 및 출생지 나라의 국적)과 ②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민으로, 나머지 한 명은 부모양계혈통주의 나라의 국민으로 하여 출생한 사람(한국 국적 및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나라의 국적)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 되므로 이중국적이 된다. 즉 한국은 국적 부여에 있어서 혈통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선천적인 이중국적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며, 후천적 이중국적은 불허하고 있다.

2. 한국의 재외동포 정의 및 구분 (정인섭과 이진영의 글을 정리함)

현실적으로 아직 재외동포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해외교포, 재외동포, 재외교포, 재외국민, 교민 등으로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헌법 제2조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재외국민이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에 영주하거나 장기간 외국에서 체류하며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재외국민등록법]도 등록대상을 “대한민국국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별영주권을 취득한 채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재일한국인, 영주권만을 받은 채 우리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미동포, 장기간 외국에 합법·비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국민 등이 포함된다.

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반면,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 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자이다.

이 두 법안은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를 합쳐 재외동포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정의를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국적 동포이려면 현재 외국국적 보유자로서 자신이나 자신의 선조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재중동포, 재CIS동포 등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외국으로 이주하였던 자나 그 자손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다. 또한 조선적 재일동포의 경우 현재 무국적 상태로서 외국국적이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흔히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자’를 재외동포라 부르며, 이러한 [재외동포 재단법]에 따르면 재중동포, 재CIS동포,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재미동포, 일본으로 귀화한 재일동포, 조선적 재일동포 등이 재외동포임은 분명하다.

2. 각국 재외동포 분포현황

2001년7월 현재 재외동포의 현황을 보면, 전세계 151개국 중 총 5,653,809명이고, 재외동포 다수 거주국 순위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포함한 CIS지역, 캐나다, 브라질, 호주, 독일, 아르헨티나 순이며, 이 중 미국, 중국, 일본, CIS지역 등4개 강국에 재외동포 전체의 91.48%가 살고 있다. 최근 들어 기타지역으로 이주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의 중점은 주변4강의 재외동포에 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출처: 외교통상부 2001.7

지역	95	97	99	2001	백분률(%)
일본	696,811	702,967	660,214	640,234	11.32
중국	1,940,398	1,985,503	2,043,578	1,887,558	33.39
기타 아시아지역	86,711	112,913	107,508	142,931	2.53
미국	1,801,684	2,000,431	2,057,546	2,123,167	37.55
캐나다	73,032	110,126	111,041	140,896	2.49
중남미	90,034	98,852	102,806	111,462	1.97
독립국가연합	461,145	450,104	486,857	521,694	9.23
유럽	66,086	72,481	64,467	73,379	1.30
중동	9,356	7,442	6,326	7,208	0.13
아프리카	3,316	3,410	4,215	5,280	0.09
총합	5,228,573	5,544,229	5,644,558	5,653,809	100

4. 재외동포 형성의 역사 및 정책 형성의 배경 (이진영의 글을 주로 참고하여 정리)

한국에서의 이민은 조선시대 말기 간도지역으로 이주 및 1900년 초 미국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을 시작으로 한다. 그 후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일본으로, 그리고 간도 지역으로 대규모 이주가 있었으며,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도 이기에 벌어진다. 즉 해방이전의 해외 이주는 대부분은 식민지 상황에서 경제적 혹은 정치적 이유로 발생했으며 주로 일본, 중국, CIS 지역으로의 이주가 대부분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70년대 광부와 간호사로 상징되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으로 노동 이주가 시작되고, 미국의 이민규제가 완화되면서 1945년 전과는 약간 다른 성격의 투자 이민이 북미지역에서 발생하게 된다. 지금까지 북미로의 이주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 해외이민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김영삼 정부 이전까지는 거의 전무했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며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은 해당 거주국가의 구성원으로 정착 장려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은 재외동포 재단과 재외동포법에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재외동포법은 김대중 정부 등장 이후인 1998년 법무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마련되었으나, 그 뿐만 아니라 훨씬 오래되고 깊다.

1980년대 초반부터 재미동포를 중심으로 이중국적 허용 요구가 꾸준히 제기 되어 왔었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음으로, 재미동포들은 국내 부동산 처리 등의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에 일부 미국 이민1 세로부터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계속 보유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또한 정부조직 내에 해외교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다룰 교민청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김영삼 정부시설 세계화추진위원회도 한때 이중국적 허용이나 교민청 설치 문제를 검토하였으나, 국내의 부정적 여론, 타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고려하여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대신 1997년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여 해외교포의 요구에 부분적으로 답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게 되자 재외동포의 법적 처우 개선 노력은 새로운 추진력을 얻게 된다. 김대중 정부 역시 한때 교민청 설치나 이중국적 허용 문제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입법 추진의 방향을 재외동포의 국내법적 지위를 폭넓게 개선시키는 쪽으로 잡았다.

1998년 8월 법무부는 '재외동포법적지위에관한특례법'이란 명칭의 입법안을 발표하였고, 그 당시 법안은 한국적 재외국민뿐 아니라 한국계 외국적 재외동포 모두를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이 법안이 발표되자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발생하였고, 중국, CIS 등과의 외교 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1998년 9월 새로운 입법안을 예고하게 된다. 주요 수정내용은 법안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해외로 이주한' 동포에 대해서만 적용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이후에 이 법에 관한 논쟁을 유발하게 된다.

5. 재외동포 관련 법률이 존재하는지?

앞서 밝혔듯이, 헌법 제2조2항은 국가에 '재외국민'의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재외국민과 관련된 법률은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취직호적정정 및 호적 정리에 관한 특례법이 있으며, 관련 규정규칙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재외국민을 위한 한국내 교육과정 운영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재외국민을 포함해 재외동포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 재단법이 있다. 또한 대통령 훈령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규정이 있다. 이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재외동포 재단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① 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은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자(외국국적 동포)이다. (재외동포법 제2조)

② 취업 및 경제활동

일단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내국인과 유사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취업 및 경제활동에서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그러나 단순 노무, 서비스업(유통주점, 풍속관련 영업장)은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 군장교, 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외무공무원, 방송사업의 대표자나 편성책임자 등에서는 외국 국적 동포의 취업이 계속 불가능하다.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는 대한민국 내에서 부동산의 취득 보유 이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서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단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제한지역은 시장 규수 등의 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 및 외국환 거래와 사회보장

국내 금융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외국환거래법상의 내국인 거주자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단 외국 학머니 유입등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규제장치로 약간의 제한이 있다.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가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의료보험 제도의 적용을 받게된다.

(2) 재외동포 재단법

① 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은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와 *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자이다. (재외동포 재단법 제2조)

② 사업

*재외동포 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 및 홍보사업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기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재외동포 재단법 제7조)

6. 재외동포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기관이 있는지? (이종훈, 정인섭 글을 참조함)

(1)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대통령 훈령에 근거해 만들어진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 기구다. 하지만 관련 규정만 있을 뿐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기구라 할 수 있다.

1996년 2월부터 기존의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활동을 시작한 이 위원회의 장은 국무총리이며, 15인 이내의 위원은 행정자치부, 법무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같은 유관 부처 장관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다. 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①재외동포의 정착 지원 ②재외동포의 법적 사회적 지위향상 ③재외동포에 대한 유대강화 ④재외동포의 국내외 경제활동 ⑤재외동포 관련 부처별 사업계획의 조정과 심의 ⑥기타 재외동포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여한 내용에 관한 심의·조정임.

(2)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재외국민이주과

재외동포 정책의 주무부처는 '외교통상부 재외국민영사국 재외국민이주과'이다. 재외국민이주과에는 현재 5명의 직원이 재외동포 관련 업무와 해외이주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영사보호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3)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 관련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1997년 10월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으로 발족한 「재외동포재단」이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 안에서 그 사회의 모범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① 재외동포 교류사업 ② 재외동포 사회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③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문화홍보사업 ④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⑤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외교통상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재외동포재단의 직제는 이사장, 기획이사, 사업이사, 감사 및 1실 5부로 구성되어 있다(1실-기획홍보실, 5부-교류부, 경제부, 정보화본부, 교육부, 문화부).

(4) 교육부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은 교육부가 담당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제교육진흥원과 한국교육원 그리고 일시체류민 자녀 교육 수행기관인 해외 한국학교를 운영한다.

교육부는 ① 기본정책 수립 ② 교육기관 설치와 운영 지원 ③ 교사 선발과 파견 ④ 귀국학생 국내 적응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담당한다.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제교육진흥원은 ① 교육용 교재와 교육자료 개발보급 ② 교육담당자 국내 초청 연수 ③ 동포 학생 모국 수학과정 운영을 담당한다. 한편 한국교육원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재외동포 성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한다. 그리고 한국학교는 전일제 정규학교로서 국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현지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

7. 한국체류 외국인과 비교해 외국적 동포에게 취하는 우대조치가 있는가?

외국인력 현황

출처: 국무총리조정실 보도자료

전체	합법체류자					불법 체류자	
	소계	합법근로자		신업 연수생	해외투자 기업연수생		
		연수취업자	전문 기술인력				
336,800 (100.0)	70,952 (21.1)	10,394 (3.1)	20,564 (6.1)	27,158 (8.1)	12,836 (3.8)	265,848 (78.9)	

02. 3월 현재) 단위: 명, %

1) 불법체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적동포 (정인섭의 논의 정리)

한국내 외국인 중 합법체류자는 전문직 및 어학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영어권 출신과 산업연수생 등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약 79%의 외국인은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미등록 노동자이다. 한국은 법적으로 노동시장을 제한적인 일부분에서만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체류 외국인의 대부분은 미등록 노동자로서 불법체류의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은 국내에서 법적 사회적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 또한 합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해도 산업연수생이나 기업연수생의 신분인 외국인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므로 내국인과 같은 경제 및 재산상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2) 합법체류 외국인과 외국적 동포

현행 재외동포법이 우대를 보장하고 있는 분야는 크게 출입국과 국내체류, 취업, 부동산거래, 금융 및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등에 대한 내용이다. 재외동포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는 재외동포법을 토대로 집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관련 개별법을 근거로 집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내체류 자격과 취업허용 범위문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집행되고 있으며, 금융과 외국환 거래에 있어서는 법체제가 기본적으로 내국인/외국인 구분에 의존하지 않고, 거주자/비거주자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3개월 이상 체류 내국인과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은 거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자는 바로 이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부분에 있어서는 재외동포법 자체의 역할이 별 필요가 없다. 또 부동산 거래에 관해서는 기존의 외국인토지법의 내용과 사실상 별 차이가 없으며, 외국적 재외동포의 국내토지 취득에는 외국인토지법의 절차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법 자체가 합법체류 외국인에 비하여 보장해주고 있는 부분은 재입국허가시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하게 해준 부분 정도라고 보여진다.

8. 재외동포 기본정책방향 및 재외동포 지원사업

(1) 현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 ① 거주국내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와 존경받는 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 ② 한민족으로서 정체성 유지와 모국과의 유대강화 지원
- ③ 국가발전에의 재외동포 역량 활용

(2) 이에 근거한 재외동포 지원정책방향

- ①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 등 위상제고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거주국에서의 권리보호와 법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가능한 지원 및 재외동포의 자조노력 지원을 강화하고
- ② 재외동포의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 고양을 위한 지원활동 강화로서 한글학교 지원확대, 문화예술단 파견 및 동포사회의 문화행사 지원 등을 강화하고

- ③ 재외동포의 역량을 조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위해 재외동포의 모국내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 ④ 국내법 및 제도개선과 함께 재외동포의 우수한 두뇌를 국내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중점사업으로 설정

(3) 재외동포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재외동포 지원사업

- ① 조사연구사업 :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 재외동포사회 연구기반 조성, 재외동포 사이버 민원실 운영
- ② 문화사업 : 한민족문화제전, 문화예술단 파견사업, 국외입양인 초청연수 및 지원사업
- ③ 홍보사업 : 홍보자료 발간, 재외동포 언론지원사업
- ④ 교류사업 : 재외동포사회 교류촉진 및 권익신장 활동 지원, 재외동포사회 숙원사업 지원, 한민족공동체 구현사업, 재외동포센타 건립촉진사업 등
- ⑤ 교육사업 : 모국어 및 민족교육 지원사업, 재외동포 장학사업, 재외동포 초청 교육연수사업
- ⑥ 경제사업 : 한상네트워크 운영사업, 내외동포 경제교류촉진 사업
- ⑦ 정보화사업 : 한민족네트워크 운영, 사이버 한상네트워크 구축

(3) 지역별 재외동포정책 기본방향 (이종훈의 논의 정리)

- ① 지역별 정책을 재외동포 집중 거주 국가별로 살펴보면, 먼저 재미동포정책의 추진방향을 ●재미동포 사회의 미국 주류사회 진출 장려 ●재미 우수동포의 국내 적극 유치 등을 통해 세계화 추진에 대한 이들의 기여를 장려 ●재미동포2세에 대한 정체성 유지 및 민족 전통문화 교육지원 ●국내활동 편의증진을 위한 국내법 및 제도의 지속개선 추진에 둠.
- ② 재중동포정책의 추진방향은 ●재중동포가 중국 국민이라는 인식의 비탕위에서 중국내에서 조선족 사회를 유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정치적 색채가 없는 경제교육문화 등 분야에 중점을 두어 재중동포에 대한 지원 추진 ●건전한 우리 기업의 동북3성 등 재중동포 밀집지역 진출을 장려하고, 현지 기술연수도 강화 ●재중동포의 국내 밀입국 및 불법취업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중국 당국과 마찰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중동포의 한국방문 연구, 학교 지원을 강화에 둠.
- ③ 재일동포정책의 추진방향은 ●우리 국적 보유 재일동포가 법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들의 일본내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 ●재일동포 기업가의 한국경제에 대한 유대성 강화를 지원하고 이들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2, 3세를 중심으로 한 청년회 육성 지원, 한국어, 한국역사 교육 등 민족교육 강화 및 전통문화 계승 노력 지원에 둠.
- ④ 재독립국기연합동포정책의 추진방향은 ●한국어 보급과 우리 전통문화, 민족교육을 통한 동질성 회복 정책에 중점을 두어 지원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각종 협회, 문화센터, 한글학교 등 동포조직을 통해 간접지원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시 현지동포 우선 채용에 둠.

9.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문제 (이종훈 박사글 정리)

재외국민, 특히 해외 일시체류 재외국민은 오래 전부터 투표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측에 제시했었다. 실제로 1966년부터 1972년 사이에 일시적으로 해외체류 재외국민에 대한 부재자 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별 다른 설명 없이 중단하게 된다. 이러한 참정 요구를 정치권에서 수용하여 1997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부여 문제를 협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이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제도를 도입할 경우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며, 교포사회가 여야 지지자로 갈려 반목과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결과 제도입은 무산되었다. 또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헌법 소원 청구인들의 요구 기각하게 된다. 이로써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제도 제도입 요구는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국내에서 당위성의 기반이 약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재외국민 부재자 투표제도 제도입 주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 당위성 이외에도 다른 자유민주 국가의 사례와 시대적 흐름이 이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OECD 가입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데, 적절한 대안을 가능한 빨리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10. 재외동포 관련 법에 관한 쟁점 (정인섭, 이진영의 논의를 정리)

(1) 재외동포의 개념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법에 대한 논란은 입법 당시부터 그 적용대상의 범위문제에 집중되었으며,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부분이기도 하다. 재외동포법에 의하면 그 적용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자 및 그 직계비속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01년11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의 외국적 동포에 대한 개념정의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하여 대한민국국적을 명시적으로 확인 받기 이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직계비속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부수립 이전 해외동포를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함으로써 한국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동법에 의해 제외된 동포는 대략 조선족 188만, CIS지역 52만, 조선적 재일동포 12만, 미국 초기 이민자1만여 명 등 총252만 명이며 전체 재외동포 중50% 가량이 이법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재외동포법이 잘사는 미국, 일본, 유럽의 동포만 동포로 인정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경제발전이 뒤늦은 국가의 동포들을 제외시켰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국내 체류중이 조선족 동포에 의해서 직접적인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재외동포를 전담할 기구는 필요한 것인가?

김영삼정권 기간부터 재외동포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전담기구로서 교민청의 설치 요구가 많았으나, 재외동포 재단의 설치로 사실상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재외동포재단은 재단일 뿐이지 일반 행정기구와 같은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는 아니므로, 그 활동범위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현재 정부내에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재외동포문제에 관한 정부내 최고 정책결정기구로 설치되어 있다. 정부 각 부처의 재외동포 사업은 여기서 조종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의 설치근거는 대통령 훈령에 불과하여 법적 기반이 취약하며, 그나마 최근 수년간은 열리지도 않아, 정부내 정책결정 기구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1999년 재외동포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이 위원회는 소집되지 않았었다.

현재로서는 재외동포에 관한 통상적 업무는 외교통상부내 재외국민 영사국이 주무부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기구 축소가 되었고, 재외동포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인 주도권을 갖고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에서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장기적으로 계획, 조정, 추진할 전담기구를 설립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개정인가, 폐지인가?

① 개정론

재외동포법 개정론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하였듯이 해방 이전에 해외로 아주한 특정 지역 동포를 개념정의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잘못이므로 그 개념규정에 대한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론은 재외동포법의 존속을 전제로 개념 규정만 손질하여 모든 동포를 포함시키자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협통주의에 뿌리를 둔다. 하지만, 재외동포법 개정론이 반드시 협통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개정론의 핵심은 특정 지역 동포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법 개정론은 재외동포법 제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재외동포법은 다시 이중국적 허용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재외동포 사회는 지난 수십년 간 재미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이중국적 허용과 교민청 설치를 요구해 왔다. 이중국적 허용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이중국적을 허용하거나 용인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국적 허용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며, 국가간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허용하기 어렵고 대신 이에 대한 처방으로 국가가 내린 것이 바로 재외동포법 제정이었다. 즉 이중국적은 부여하지 못하더라도 이에 준하는 우대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어쨌든, 재외동포법이 돈 있는 재미교포는 우대하고, 돈 없는 중국동포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향후2년 내에 해소되게 되었다. 즉, 현재의 국적과는 상관없이 협통주의에 입각하여 모든 한국계 동포를 포용하는 입법이 되면 외국적 동포간의 차별문제는 해소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책은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 법과 관련된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내 체류 중국동포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되지 않는다.

② 폐지론

재외동포법 관련 쟁점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은 폐지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재외동포법이 시대착오적인 민족우대를 규정한 법이어서 국제법과 국제조류에 역행한다는 것과, 재외동포법이 여러 문제를 야기하므로 폐지하고 다른 대안을 찾자는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재외동포법은 성별, 인종, 종교, 민족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규약과 국제법에 반하여, 법적으로 외국국적자들에게 민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로 특별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인 내외국인 평등주의에 반하여 국제주체에도 역행한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주장하고 있는 이 논리는 현재 확산되어 가는 논리중의 하나이다. 외교통상부는 2003년까지 재외동포법 개정을 자연시킴으로써 이 법의 자동폐기를 지향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나 국회의 개정의견에 대해 외교 마찰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법의 개정보다는 개별 법률, 제도 개정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1.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2. 정인섭, 재외동포법, 사람생각, 2002
3. 이진영, 해외한민족사회의 성장과 정체성 및 재외동포정책, 제3회 세계한민족포럼토론회, 재외동포재단, 2002
4. 김동춘, 남북화해를 가로막는 한국사회 내부의 정신적 장벽들, 제3회 세계한민족포럼토론회, 재외동포재단, 2002
5. 재외동포재단 현황 및 사업소개, 재외동포재단 미간행물